

「풍수해(태풍 · 호우 · 대설)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10.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가위기관리기본 지침」 및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재난 발생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적용할 세부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해야 하며, 현장조치 이외의 재난 관리 단계별 임무·역할 등 일반적인 사항은 표준매뉴얼 및 실무매뉴얼을 참조하여 활용한다.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 다만,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재난이 발생하면 가급적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목 차 -

I. 일반사항

1. 목적	2
2. 범위	2
3. 관련법규	5
4. 용어정의	7

II. 위기관리체계

1. 국가 위기관리체계	10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대응체계	13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5
4. 위기대응 단계	17
5. 위기경보	18
6. 비상근무체계	19
7. 보고체계	21

Ⅲ.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① 태풍·호우

1. 관 심(또는 우리나라 영향 가능 태풍 발생시)	23
가. 상황	23
나. 조치목록과 조치내용	23
다. 세부 조치내용	25
라.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	28
2. 주의~경계(또는 비상1~2단계)	29
가. 상황	29
나. 조치목록 및 조치내용	29
다. 세부 조치내용	32
라.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	37
3. 심 각(또는 비상3단계)	38
가. 상황	38
나. 조치목록 및 조치내용	38
다. 세부 조치내용	41
라.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	45

② 대설

1. 관 심	46
가. 상황	46
나. 조치목록과 조치내용	46
다. 세부 조치내용	48
라.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	51
2. 주의~경계(또는 비상1~2단계)	52
가. 상황	52

나. 조치목록 및 조치내용	52
다. 세부 조치내용	55
라.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	60
3. 심 각(또는 비상3단계)	61
가. 상황	61
나. 조치목록 및 조치내용	61
다. 세부 조치내용	63
라.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	66

IV. 재난대응절차 및 프로세스

1. 재난대응 절차도	68
2. 재난대응 단계	70
3. 재난대응 프로세스	72
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서별 협업기능	79
5. 비상연락망	80

V. 별첨

1. 해양분야 재난대비 대응요령 92
2. 수산분야 재난대비 대응요령 100
3. 비상대응 관련 각종 서식 123
4. 사전점검사항 체크리스트 130
5. 우리부(본부) 태풍 대비 비상근무절차서 133
6. 지방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표준(안) 141
7. 항만 및 어항시설 현황 147
8. 항만 및 어항공사현장 현황 150

【제·개정 이력】

일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	협의기관
'13.11.6.	제정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실무 매뉴얼 내용 반영	항만정비과	
'14.9.23.	언론 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국민행동요령 수정	안전행정부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수정 및 소방방재청 국민행동요령 반영 요청에 따른 본부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항만정비과	
'16.6.2.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지방청 명칭변경,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및 언론홍보 매뉴얼 등 현행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본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 등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항만정비과	
'16.10.4.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 임무·역할,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비상연락망 등 수정	항만정비과	
'16.8.16.	기관명칭 변경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항만정비과	
'18.8.20.	해양수산부 「풍수해(태풍·호우·대설)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풍수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항만정비과	
'19.5.23.	해양수산부 「풍수해(태풍·호우·대설)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풍수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항만정비과	
'20.6.12.	위기경보 수준 변경, 과거 피해 사례 추가, 선박대피협의회 운영기준 추가 등	해양수산부 「풍수해(태풍·호우·대설)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항만정비과	
'22.1.24.	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규 추가 (어선안전조업법), 해수부 직제 개편사항 반영	해양수산부 「풍수해(태풍·호우·대설)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항만정비과	
'23.10.17.	비상기구명칭, 비상단계 기준, 비상기구운영 등 전면개정	해양수산부 「풍수해(태풍·호우·대설)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항만정비과	



일반사항

일반사항

1 목 적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근거로 태풍, 호우 및 대설로 인한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 사항 및 대응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범 위

가. 적용 범위

가. 대상

- 태풍, 호우, 대설 재난안전 위기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각 과(소) 및 유관기관 등의 위기대응 단계별 활동

나. 상황

- 태풍, 호우, 대설로 인해 선박, 시설물 등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 태풍·풍랑 등에 따른 해일을 제외한 천문조·이상고파 등 「조수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정한 경우 「조수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다.

나. 기관 범위

- 풍수해재난에 대한 부산청과 유관기관 등의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다. 위기 유형과 형태

유형	형태
태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의 직·간접(침몰, 파손, 기름유출 등) 피해 • 어항 및 항만시설(정박시설, 크레인, 원목 야적장 등) 피해 • 수산양식시설(생물) 및 어망·어구 등 피해 • 항로표지시설 피해 • 연안지역 침식피해 • 해상 교통두절 •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피해 • 침수, 범람에 의한 해양수산시설물 피해 • 항만 적재화물 피해
호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기능 약화 : 항내 토사 매몰 • 침수, 범람에 의한 해양수산시설물 피해 • 건설현장 및 낚시터 피해
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어망·어구 등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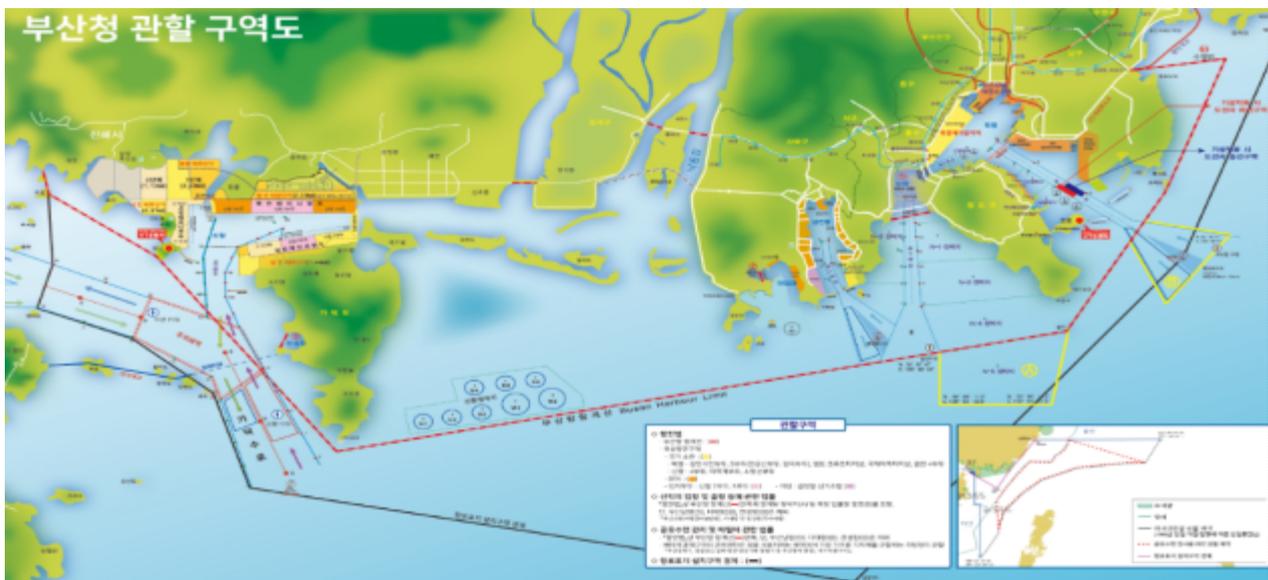
라. 위기 전개양상



마.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범위(관할구역)

- 해양항만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에 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 항만개발운영 : 부산항(북항, 감천항, 다대포항, 신항, 진해신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도>



3

관련 법규

가.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나. 관련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기상법
- 해사안전법
- 해운법
- 어선법
- 어선안전조업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항로표지법
- 수산업법
- 낚시어선업법
- 양식산업발전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항만법
- 어촌·어항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해구호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 관련 규정, 지침 등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 예규)
- 예보업무규정(기상청훈령)
- 방재기상운영규정(기상청훈령)
- 어업재해 피해조사 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해양수산부예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4 용어 정의

구분	내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단체	
위기 경보 수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심(Blue)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② 주의(Yellow) :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④ 심각(Red) :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 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재난 관리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비상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 수습형, 완만 진행형, 순간 증폭형으로 구분 	
	결과 수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완만 진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 증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수준이었으나,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중대 재난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유형

구분		내용	
태 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인 것 	
기 상 특 보	태 풍	주 의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경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 우	주 의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경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 설	주 의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경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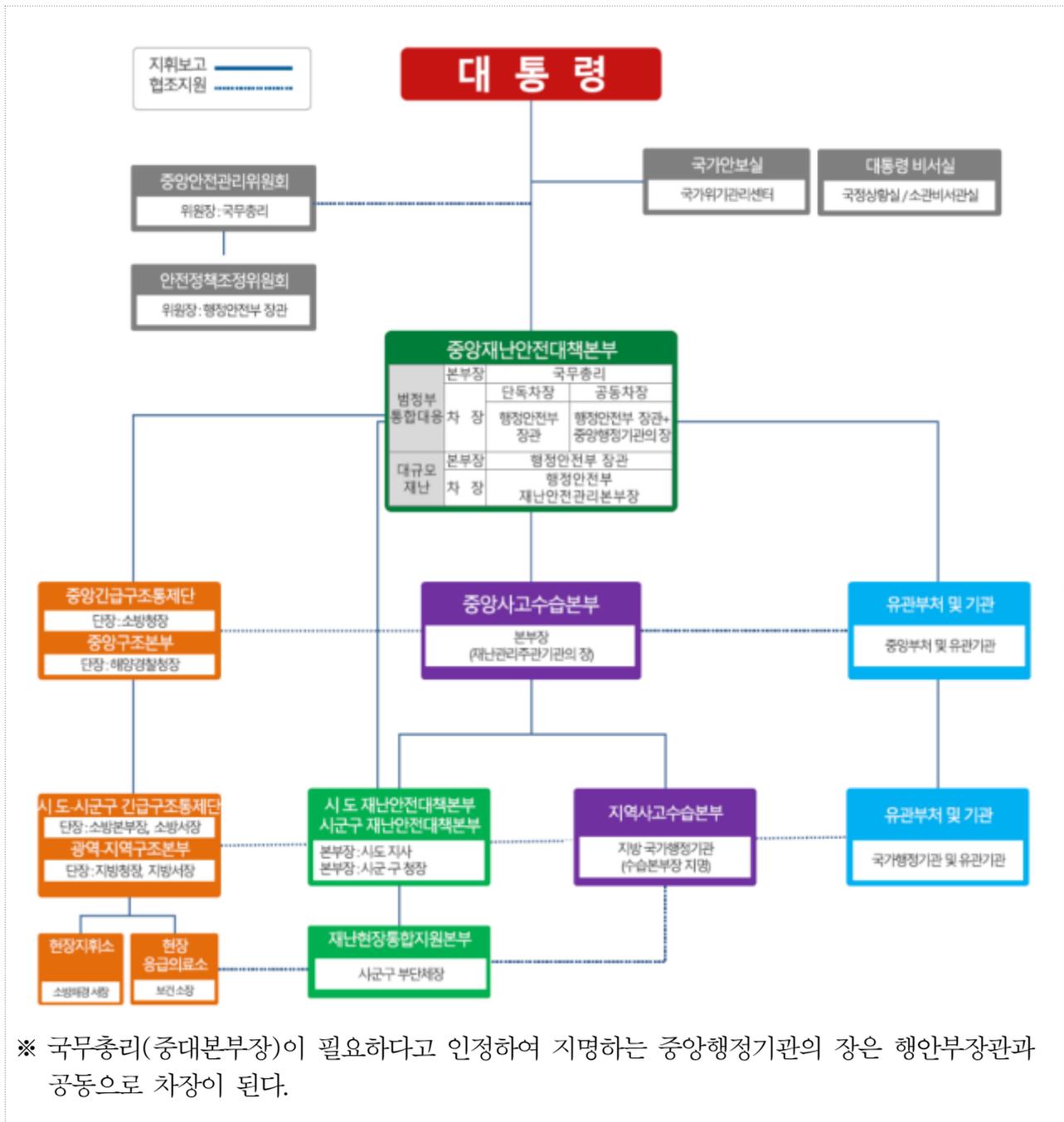
위기관리체계



위기관리체계

1 국가 위기관리체계

가. 종합체계도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분	임무 및 역할
<p>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소관 비서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
<p>중앙안전관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p>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 (중대본 미 구성 시 행안부장관이 파견) •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업, 지원 및 총괄·조정 등
<p>수습지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 조치사항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
<p>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 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운영(시·군·구 부단체장)

구분	임무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 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교통, 물자지원 등 (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사고수습 재난 수습 총괄 조정 및 언론 대응 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재난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휘 피해민 지원 대책 강구 등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 담당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담당
중앙구조본부 (해양경찰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지휘·통제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등
광역구조본부 (지방해양경찰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관할 해역의 수난구호활동과 관련하여 타국 구조조정센터(RCC)간 국제적인 협력 등
지역구조본부 (해양경찰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해역 내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수색구조세력의 효율적 운영 해상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대 편성 및 운영 해상 응급환자 처치 및 의료기관 긴급이송을 위한 구급대 편성·운영
대책지원본부 (행정안전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수본 및 지대본의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수습 지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행·재정상 조치, 직원 파견 등 필요한 지원 요청 등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등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등 재난 복구에 관한 사항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대응체계

가. 비상대책본부

(1) 비상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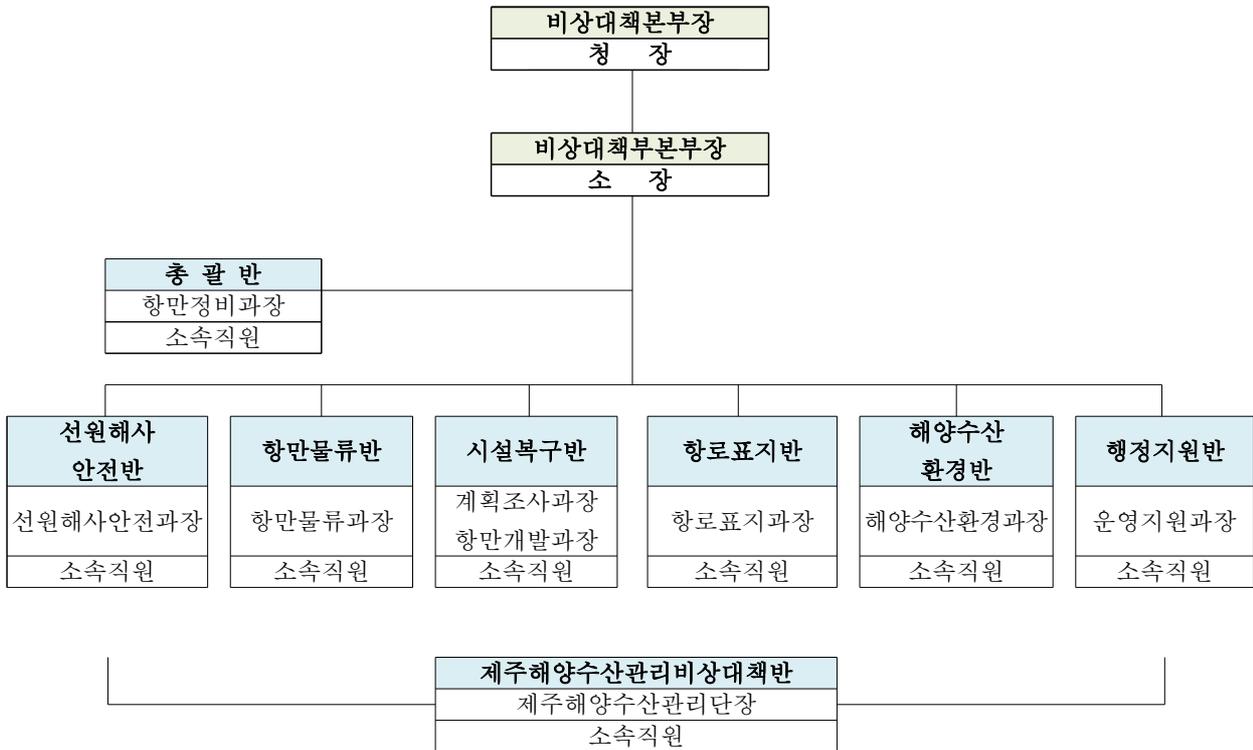
- 본부 비상1단계 시행 시 전 소속기관 비상1단계 시행 및 유지
- 권역별*로 태풍 호우대설 영향 정도에 따라 본부에서 비상단계를 시행 조정
 - 본부와 동일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지역은 본부에서 지정
 - 그 외 지역은 비상1단계를 유지하되, 태풍 호우대설 영향 등에 따라 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조정

* (권역구분) 1권역(서북권 : 인천, 평택, 대산, 군산), 2권역(서남권 : 목포, 여수), 3권역(동남권 : 마산, 부산, 울산, 포항), 4권역(동북권 : 동해), 5권역(남해권 : 제주)

구분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근무편성	총괄부서 (항만정비과)	⇒	태풍 각 실무반	⇒	태풍 각 실무반 *내습단계부터 전직원 비상대기
주요 임무	공통	·비상근무체계 점검 ·재난관리자원 점검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재박선박 상황관리	·취약시설 집중점검
	지방청	·소관시설 현장점검		·항만 비상운영 준비 ·선박대피협의체 개최	·항만 비상운영 가동 ·항만 출입통제
	어업단	·소관시설 현장점검		·출어선 대피사항, 피해상황 파악	·재난취약요소 특별관리

※ 기관장 재량에 따라 비상대응 기구의 근무방식, 근무조 편성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2) 비상대책본부 구성(3단계 기준)



※ 소속기관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변경 가능

구 분	임무 및 역할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재난 수습·복구대책 총괄 비상대책본부 업무조정
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업무에 대한 통제 및 각 실무반의 상황취합·보고 재난 수습·복구 종합대책 수립 본부 및 유관기관 총괄 협조체계 유지
선원해사안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항선 대피현황 파악·보고 선원 및 선박 인명·재산 피해조사 및 보고, 응급복구지원
항만물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대피협의체 참석 및 선박대피현황 파악·보고 항만기능시설(민간시설 포함), 화물, 운영장비, 항내선박 등의 재해예방, 재해상황 및 긴급조치사항 파악·보고 항계내 선박 및 인명 사고 신속 대응 조치 및 지원
시설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어항시설물 및 건설공사현장 안전대책 수립·시행 피해시설의 복구 계획수립 및 조치
항로표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로표지시설 및 공사현장 안전대책 수립·시행 항로표지선 안전관리 피해시설의 복구 계획수립 및 조치 사상자 후송·응급조치 지원, 유족보상업무
해양수산환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공선 및 오염 방재자제 등 관리 해양오염 등에 의한 쓰레기 처리 계획 수립 및 장비 동원
행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지원 재난 자원 지원 총괄·조정 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 각 반별 반장이 부득이하게 공석일 경우에 한하여 계장으로 대체

※ 제주단은 풍수해 재난 행동조치 행동매뉴얼 제주단 지침에 따라 별도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가. 대응 개념

- (징후감지) 태풍 발생 시 우리나라 영향 여부 검토, 호우대설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 검토
- (초기대응)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호우/대설주의보·경보가 발표되거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취하는 예방조치
- (비상대응) 태풍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을 때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피해에 대응하는 조치
- (수습복구) 피해현장상황을 수습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취하는 임시적인 복구 조치

나. 대응 지침

- 풍수해 재난발생 예상(징후감지) 또는 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자동 실행
- 풍수해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대응 조치
 - 수방자재·구호물자의 점검 및 기동력 확보
 - 피해 및 사전조치사항 보고
 - 재해위험지역 예찰강화
 - 피해상황 보고
 - 항만시설·장비 및 항만공사장 점검
 - 여객선 등 선박 입·출항 통제 및 선박대피 조치
 - 항만하역 조기완료 및 항만 내 보관화물 반출 유도

- 사전조치 및 응급복구상황 보고
- 기상상황 등을 검토하여 여객선 운항 안전 지원
- 해양항만 시설 점검 등 안전조치
- 수산양식물 및 어업관련 시설 피해 예방조치
- 소형선박(어선포함) 육상인양, 결박 등 안전조치 강화
- 방파제 등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구역 관리 강화

다. 판단·고려 요소

○ 태풍

- 태풍의 진로, 중심기압, 크기, 강도, 및 동반되는 풍속, 강수량
-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 태풍의 영향권 내에 위치한 항만 및 어항, 유관기관 안전도 등
- 본부 및 권역별 비상단계 시행 상황

○ 호우

- 호우의 강우강도, 강수 지역의 분포, 국지·계절라성 호우
- 호우피해 예상지역의 여건,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 태풍의 영향권 내에 위치한 항만 및 어항, 유관기관 안전도 등
- 행안부 위기경보 발령 단계 및 본부 비상단계 시행 상황

○ 대설

- 대설의 강도, 강수 지역의 분포, 국지·계절라성 호우
- 대설피해 예상지역의 여건,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
- 태풍의 영향권 내에 위치한 항만 및 어항, 유관기관 안전도 등
- 행안부 위기경보 발령 단계 및 본부 비상단계 시행 상황

4 위기대응 단계

가. 국가 위기관리단계 기본 방침

단계		내용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 제거 또는 감소 단계	
대비	평상시	- 위기 상황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 제고단계	
	징후 감지	재난 대비 (특별) 대책	- 주기적 또는 재난유형별 취약한 시기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단계
		징후 감지	- 위기 징후 접수 이후 감시활동 강화 단계
	초기 대응	- 재난 상황접수 이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상기구 설치 이전 단계	
대응	비상 대응	- 비상기구 설치 및 운영 단계	
복구	수습 복구	- 위기 발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복구자원 투입 단계	
	항구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단계	

나.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단계

위기관리 단계		해수부 위기대응 단계	행안부 위기경보			
예방		-	-			
평상시		-	-			
대비	징후 감지	재난 대비 (특별) 대책	관심 (Blue)			
		징후 감지	관심 (Blue)			
	초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우리나라 영향 가능성 - (호우대설) 기상특보 발효 또는 피해예상 시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대응	비상 대응	비상대책본부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25°N+135°E 이내 도달 또는 제주 태풍 영향권 3~5일전 - (호우대설) 위기경보 주의 발령 				
		비상대책본부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태풍영향 2~3일 전 - (호우대설) 위기경보 경계발령 				
		비상대책본부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태풍영향 1~2일 전 - (호우대설) 위기경보 심각발령 				
복구	수습 복구	해양수산 시설 피해발생 시	-			
	항구 복구	연속적인 복구 필요 시	-			

5 위기경보

가. 국가 위기경보 수준

종류	판단기준	부산청 주요활동
-	○ 위기징후 감시 결과, 징후목록이 포착되지 않은 상태	위기징후 감시 및 사고예방 활동 - 해양안전 대책 수립·시행 (점검·교육·훈련·협의회 등) - 매뉴얼 관리·운영
관심 (Blue)	○ 태풍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호우 빈발 시기	○ 비상 근무체계 점검 ○ 취약시설물 예찰활동, 점검 강화
주의 (Yellow)	○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호우 예비특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항만내 재박선박·화물보관실태 파악, 재난시설 및 항만시설장비 점검 ○ 항만별 선박대피 계획 시행, 선박입출항 통제 검토
경계 (Orange)	○ 태풍주의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 항계 내 대기선박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 ○ 선박입출항 관리 ○ 비상 근무체계 유지 ○ 태풍 내습전 최종점검 및 관공선 안전관리 ○ 항만시설 피해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심각 (Red)	○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항계 내 대기선박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 ○ 선박입출항 관리 ○ 비상 근무체계 유지 ○ 태풍 내습전 최종점검 및 관공선 안전관리 ○ 항만시설 피해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 1)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이 복잡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를 위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2) 피해범위가 한정되고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지역단위(발령 대상기관 또는 지역 등 명시) 위기경보 발령 가능
- 3) 위기상황은 전개양상에 따라 결과수습형의 경우 바로 '심각', 완만진행형은 순차 격상, 순간 증폭형은 2차 피해 발생시점에 따라 '심각' 발령

※ 태풍, 호우재난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 단, 위 발령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 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함

6 비상근무체계

가. 근무체계

구분		근무기준	근무편성	근무인원
항만 정비과	초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우주의보 3개 시·도 이하에 발표 태풍정보 발표 대설주의보 3개 시·도 이하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 항만정비과 징후 감시활동 수행 	3명
비상 대책 본부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수해 위기경보 '주의' 발령 태풍이 25°N+135°E 이내 도달 또는 제주지역 태풍영향 3~5일 전 또는 본부 비상1단계 시행 시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유선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반 : 5급 1명, 6급이하 1명 - 각 실무반 : 6급이하 1명 * 단, 본부 및 비상대책본부장의 비상근무 지시가 있을 때는 상황실 근무 실시 	8명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수해 위기경보 '경계' 발령 태풍영향 2~3일전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본부 비상2단계 시행 지정 시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 실무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반 : 5급 1명, 6급이하 1명 - 각 실무반 : 6급이하 1명 * 상황판단회의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8명~14명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발령 태풍영향 1~2일전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본부 비상3단계 시행 지정 시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 실무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반 : 5급 1명, 6급이하 1명 - 각 실무반 : 5급 1명, 6급이하 1명 * 7개 실무반 전체를 운영하며, 전 실무반원 상황실 근무원칙, 필요시 전 직원 근무 ** 상황판단회의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14명~전직원
<p>● (참고) 중대본 발령 기준</p> <p>(1단계) 호우주의보 4개 시·도 이상에 발표, 호우경보 3개 시·도 이상에 발표, 태풍 예비특보 발표</p> <p>(2단계) 호우경보 4개 시·도 이상에 발표, 태풍주의보·경보 발표 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p> <p>(3단계) 호우경보 4개 시·도 이상에 발표 및 해당 시·도에 3일 이상 호우 전망 시,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p>				

나. 근무요령

○ (근무교대) 24시간 주야 교대근무

<부산청 비상대책본부 근무교대>

평일: 09:00 익일 09:00

주말 및 공휴일: (주간) 09:00 18:00, (야간) 18:00 익일 09:00

* 비상대책본부 가동시 반장(과장급)은 09:00 22:00, 근무지 유선대기

** 야간 근무자는 (필요시) 매일 09:00 정기 상황점검회의 참석 후 근무교대

* 평일 근무자는 초과근무(일별 14시간) 또는 대체휴무 지정

** 주말 및 공휴일 주간 근무자는 초과근무(일별 8시간) 또는 대체휴무 지정

*** 주말 및 공휴일 야간 근무자는 초과근무(일별 14시간) 또는 대체휴무 지정

**** 식사 등 이석 시에도 교대로 실시하여 반별 최소 1인 이상 근무 유지하고, 반장은 1시간 이내 응소가능 지역에서 유선 대기

○ (인수인계) 근무 교대 30분 전부터 합동근무 실시

* 업무에 공백 및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반장 및 반원간 인수인계 철저

○ (정기보고) 매일 09시, 17시 상황점검회의 실시(필요시)

- (본부) 각 실무반에서는 매일 정기보고(08, 16시 기준) 자료를 08시 및 16시까지 비상대책본부(반) 총괄상황반에 보고*

* 비상대책본부 반별 임무·역할에 따라 반별정기보고자료 취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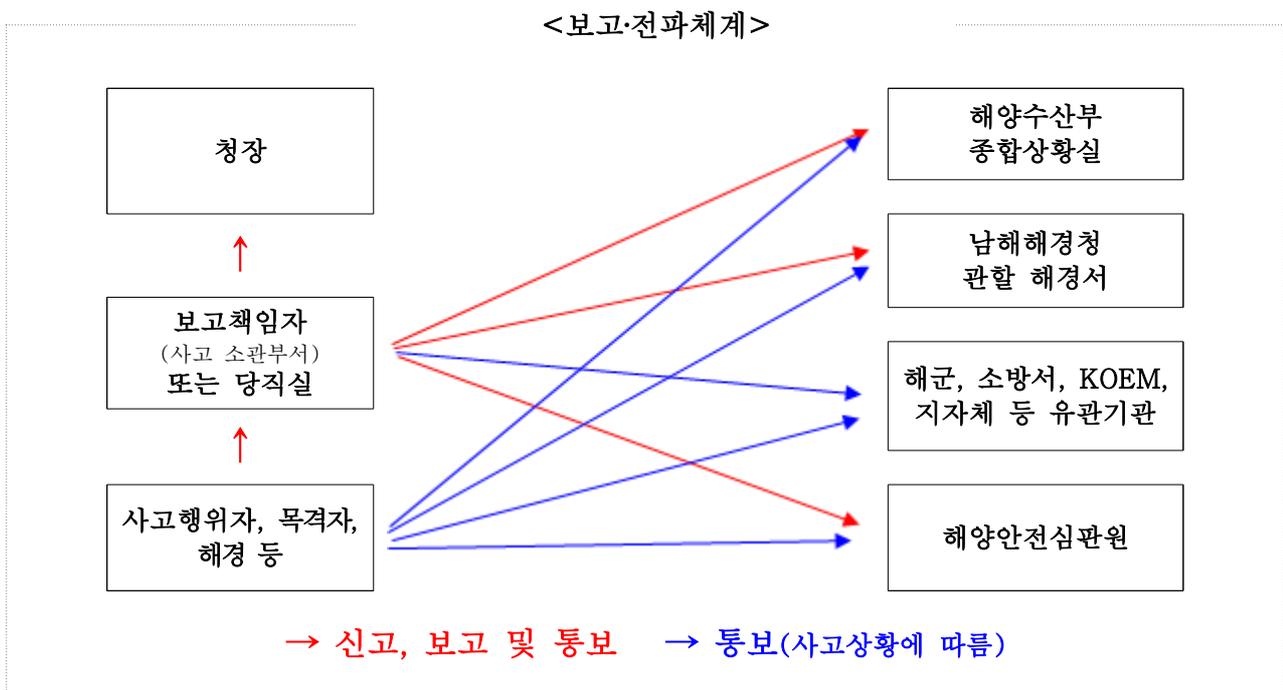
- (소속기관) 매일 정기보고(08, 16시 기준) 30분 이전에 비상대책본부(반) 각 실무반에 동시 보고*

* 소속기관 반별 임무·역할에 따라 반별 정기보고자료 작성 → 소속 기관 총괄반 보고 → 소속기관 총괄반은 본부 각 실무반에 온메일로 08, 16시까지 제출

○ (수시보고) 피해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 총괄상황반으로 보고

7 보고체계

- 사고담당 과(소) 또는 당직실에서는 사고 접수 후 청장, 부산청 당직실, 담당과(소),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해경 등에 신속 보고(전파)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① 태풍·호우

1 관 심(또는 우리나라 영향 가능 태풍 발생 시)

가. 상황

- 태풍 호우 빈발시기(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5.15 ~ 10.15)
-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또는 발생시기 도래

나. 조치목록과 조치내용

조치목록	①-1 위기징후 관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1-1 위기징후 감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용] <input type="checkbox"/>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시설점검 지시	항만정비과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①-1-5 상황판단회의 <input type="checkbox"/> 상황판단회의(초기상황판단 회의)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4 대책본부 운영준비 <input type="checkbox"/> 재난대비 사전 준비체계 구축	항만정비과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점검			
①-2-7 현장 상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항만(어항)시설물 보호조치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7 현장 상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재난방지 예방실태 현장(재해취약시설 포함) 지도점검 실시	항만물류과	각 과(소)·팀	BPA
①-2-7 현장 상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재난대비 취약요인 사전해소	항로표지과	각 과(소)·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①-2-7 현장 상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선박운항 안전관리 강화대책 강구 <input type="checkbox"/> 항로별 여객선 운항 동정 파악	선원해사 안전과	각 과(소)·팀	BPA,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①-2-4 대책본부 운영준비 <input type="checkbox"/> 직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정비 <input type="checkbox"/> 청사 내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	운영지원과	각 과(소)·팀	-

조치목록	⑨-2 오염예방 및 환경관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⑨-2-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input type="checkbox"/> 해양오염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input type="checkbox"/>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설(피해우려지역) 비상연락체계 확인	해양수산 환경과	각 과(소)·팀	해경, 해양환경공단

다. 세부 조치내용

(1) 항만정비과

-1-1 위기징후 감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용]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시설점검 지시

-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 지시

-1-5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초기상황판단 회의) 개최

상황판단회의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태풍발생 시 (태풍이 북위 25도 및 동경 135도 이내 도달 시 또는 기상청 예보기준 제주지역이 태풍 영향권(강풍반경 내) 들기 3~5일 전) ○ 풍수해 위기경보 '주의' 발령(=중대본 비상 1단계 근무 발령) 시
회의주재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참석	○ 항만정비과장 등
논의 사항	○ 태풍의 진행경로, 호우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 강우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비상단계발령 등
추진 사항	○ 비상대응 단계(1단계) 결정 및 전파(전자결재 공문)

-2-4 대책본부 운영준비

재난대비 사전 준비체계 구축

- 비상근무체제 가동 사항 점검
- 비상대책본부 가동 대비 실무반 별 근무수칙 정비
-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정비

-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점검

- 비상연락, 유관기관 협조, 비상근무 체계 등 정비

-2-7 현장 상황 파악

항만(어항)시설물 보호조치

- 항만(어항)시설 및 장비 등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 항만(어항)공사장 및 재해 취약시설 등 사전 보완조치

(2) 항만물류과

-2-7 현장 상황 파악

재난방지 예방실태 현장(재해취약시설 포함) 지도점검 실시

- 관련분야 합동으로 유관기관 등 이행상황 점검
 - 점검결과 위험용인이 있는 시설물은 가용 예산으로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 등 정비 완료 및 사전 재해응급대책 강구
- * (재해사전대비 기간) 3월부터 5월까지 1회 이상 / (재해기간) 5.15~10.15까지 수시점검

(3) 항로표지과

①-2-7 현장 상황 파악

□ 재난대비 취약요인 사전해소

- 유·무인표지 정상 작동유무 점검·정비
- 진행 중인 항로표지 시설공사 공정 파악 및 현장책임자 비상연락 유지

(4) 선원해사안전과

-2-7 현장 상황 파악

선박운항 안전관리 강화대책 강구

-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선박운항 통제계획 마련
- 항계권 계류선박에 대한 선박대피 계획 수립

항로별 여객선 운항 동정 파악

- 운항중인 선박현황, 선박위치, 승선여객 및 입항예정시간, 여객선 피항지, 여객터미널 정박시 고박 등 피해방지 방안 등

(5) 해양수산환경과

-2-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해양오염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유관기관 공조체계 및 협력사항 등 사전 확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설(피해우려지역) 비상연락체계 확인

(6) 운영지원과

-2-4 대책본부 운영준비

직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정비

청사 내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

라.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지방청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 비상 근무체계 점검 [①-2-7 현장 상황 파악] • 취약시설물 예찰활동, 점검 강화
항만공사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 비상 근무체계 점검 [①-2-7 현장 상황 파악] • 선박입출항 관리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①-2-7 현장 상황 파악]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생물 안전조치(내수면 포함) 지도·교육
국립수산과학원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 비상 근무체계 점검 [①-2-7 현장 상황 파악] • 취약시설물 예찰활동, 점검 강화
국립해양조사원	[①-1-3 위기징후 보고 및 전파] <input type="checkbox"/> 조석, 조류 등 바다날씨 정보 등 제공

2 주의~경계(또는 비상1~2단계)

가. 상황

(1) 비상1단계

- 본부 비상1단계 시행 시 즉시 시행 및 유지
- 또는 행정안전부 위기경보 ‘주의’ 발령 시, 태풍이 북위 25도 및 동경 135도 이내 도달하거나 기상청 예보 기준 제주지역이 태풍 영향권 들기 3 5일 전 상황을 고려하여 부산청 자체 판단 후 시행

(2) 비상2단계

- 본부 비상2단계 시행 권역으로 지정 시 즉시
- 또는 행정안전부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 태풍영향 2~3일 전 상황을 고려하여 부산청 자체 판단 후 시행

나. 조치목록 및 조치내용

(1) 비상1단계

조치목록	①-1 위기징후 관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1-5 상황판단 회의 <input type="checkbox"/> 상황판단회의 개최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풍수해 상황 예측 <input type="checkbox"/> 호우 상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사전대비단계 비상근무체계 가동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간 비상통신망 구축 및 점검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조치목록	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비상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2) 비상2단계

조치목록	①-1 위기징후 관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1-5 상황판단 회의 <input type="checkbox"/> 상황판단회의 개최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풍수해 상황 예측 <input type="checkbox"/> 호우 상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사전대비단계 비상근무체계 가동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간 비상통신망 구축 및 점검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①-2-7 현장 상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현장 방문(피해 우려지역 등 현장 방문)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항로별 여객선 운항 동정 파악 및 비상연락망 확인 <input type="checkbox"/> 여객선 피항지 지정 및 협의 <input type="checkbox"/> 여객선터미널, 접안시설 등 시설 점검 등	선원해사 안전반	각 과(소)·팀	BPA,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무역항 운영 상황 분석 및 위기 대응 계획 정비 <input type="checkbox"/> 항만 내 재박선박, 하역시설 및 체화화물 안전상태 확인	항만물류반	각 과(소)·팀	BPA, '퀵' 운영사 등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유인등대, 무인표지 점검 및 정비 <input type="checkbox"/> 항로표지업무용 선박(항해선박, 정박선박) 현황 및 대책 수립	항로표지반	각 과(소)·팀	한국항로표지 기술원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항만시설 및 건설현장·장비 대비태세 강화 <input type="checkbox"/> 항만(어항)시설물 재난예방대책 시행	시설복구반	각 과(소)·팀	건설현장

조치목록	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비상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상황실, 통신시설 설치 등 행정지원	행정지원반	각 과(소)·팀	-

조치목록	⑨-2 오염예방 및 환경관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⑨-2-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input type="checkbox"/> 해양오염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input type="checkbox"/>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설(피해우려지역) 비상연락체계 확인	해양수산 환경반	각 과(소)·팀	해경, 해양환경공단

조치목록	⑪-2 통제 및 질서유지활동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⑪-2-1 재난현장(취약지역) 출입통제 □ 선박·어선의 대피, 출항 통제 등 실시	항만물류반	각 과(소)·팀	BPA, '퀵' 운영사 등

다. 세부 조치내용

< 비상1단계 >

(1) 총괄반

-1-5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개최

- 태풍·호우의 진행경로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등 대처계획을 논의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시기	○ 풍수해 위기경보 '경계' 발령(=중대본 비상 2단계 근무 발령)되어 필요한 경우 ○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가능성이 있거나)한 경우
회의주재	○ 비상대책본부장
참석	○ 총괄반장 등
논의 사항	○ 태풍의 진행경로, 호우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 강우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비상단계발령 등
추진 사항	○ 비상대응 단계(2단계) 결정 및 전파(전자결재 공문)

-2-2 긴급대응 조치

풍수해 상황 예측

- 기상청 등의 과거자료, 해당 연도 기상전망 및 재해연보 등을 바탕으로 기상상황 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을 통해 풍수해상황 예측

호우 상황 파악

- 태풍 발생시 태풍의 진행방향, 호우발생시 호우상황 파악

사전대비단계 비상근무체계 가동

유관기관간 비상통신망 구축 및 점검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 태풍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유관기관의 조치사항 점검, 확인

-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비상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본부지시 및 필요시)
 - 24시간 유선대기(단, 본부 및 비상대책본부장의 비상근무 지시가 있을 때는 상황실 근무 실시)

총괄반: 5급 1명, 6급이하 1명

각 실무반: 6급이하 1명

- 유관기관 등 비상근무실태 확인
- 각 실무반으로부터 정기보고 접수 및 본부 보고
- 본부장 태풍상황보고(매일 09시/필요시)

< 비상2단계 >

(1) 총괄반

-1-5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개최

- 태풍·호우의 진행경로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등 대처계획을 논의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시기	○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발령(=중대본 비상 3단계 근무 발령)되어 필요한 경우 ○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가능성이 있거나)한 경우
회의주재	○ 비상대책본부장
참석	○ 총괄반장 등
논의 사항	○ 태풍의 진행경로, 호우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 강우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비상단계발령 등
추진 사항	○ 비상대응 단계(3단계) 결정 및 전파(전자결재 공문)

-2-2 긴급대응 조치

풍수해 상황 예측

- 기상청 등의 과거자료, 해당 연도 기상전망 및 재해연보 등을 바탕으로 기상상황 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을 통해 풍수해상황 예측

호우 상황 파악

- 태풍 발생시 태풍의 진행방향, 호우발생시 호우상황 파악

사전대비단계 비상근무체계 가동

유관기관간 비상통신망 구축 및 점검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 태풍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유관기관의 조치사항 점검, 확인

①-2-7 현장 상황 파악

- 현장 방문(피해 우려지역 등 현장 방문)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 비상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본부지시 및 필요시)

- 7개 실무반 운영(상황판단회의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

(총괄반) 5급 1명, 6급이하 1명

(각 실무반) 6급이하 1명

(평·휴일) 교대 30분전 합동 근무(인수인계 등)

- 유관기관 등 비상근무실태 확인
- 각 실무반으로부터 정기보고 접수 및 본부 보고
- 본부장 태풍상황보고(매일 09시/필요시)

(2) 항만물류반

①-2-2 긴급대응 조치

- 무역항 운영 상황 분석 및 위기 대응 계획 정비
 - 항만 내 재박 선박·화물보관 실태파악, 재난시설 및 항만시설장비 등 점검, 소속기관별 운영 검토
 - 항만별 선박대피 계획 시행, 선박입출항 통제 검토 추진
- 항만 내 재박선박, 하역시설 및 체화화물 안전상태 확인
 - 하역시설 고박 및 화물고박 현황 파악
 - 컨테이너 단수 조정 및 필요 시, 이동조치

①-2-1 재난현장(취약지역) 출입통제

- 선박·어선의 대피, 출항 통제 등 실시
 - 필요시 선박대피협의체 개최 및 선박입출항 통제 검토

(3) 항로표지반

-2-2 긴급대응 조치

유인등대, 무인표지 점검 및 정비

- 비상발전기 시운전 및 유류확보 및 항로표지 고시기능 유지
- 항로표지 예비품 현황 파악

항로표지업무용 선박(항해선박, 정박선박) 현황 및 대책 수립

- 기상정보 파악 및 통신망 유지, 항만상황 파악
- 선체·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철저

(4) 시설복구반

-2-2 긴급대응 조치

항만시설 및 건설현장·장비 대비태세 강화

- 항만어항 시설물, 대형 공사장 등의 위험 유발 시설물의 예찰활동 및 점검 강화를 통해 재해 위험요소의 제거

항만(어항)시설물 재난예방대책 시행

- 시공중인 시설물

- 취약부분 주요 공중 태풍기 완료 조치토록 공정계획 수립
- 태풍주의보 발효시 임시 보강조치 후 장비 및 인원 안전지대로 대피
- 기존시설물
 -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단계별 유지보수 계획 수립
 - 필요시, 보수 필요한 시설물 인근 공사 시공업체로 우선 보강 조치

(5) 선원해사안전반

-2-2 긴급대응 조치

항로별 여객선 운항 동정 파악 및 비상연락망 확인

- 운항중인 선박 현황, 위치, 승선여객 및 입항예정시간 등 여객선 피항지 지정 및 협의
- 피항지 선정, 여객터미널 정박시 고박 등 피해방지 방안 여객선터미널, 접안시설 등 시설 점검 등

(6) 해양수산환경반

-2-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해양오염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유관기관 공조체계 및 협력사항 등 사전 확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설(피해우려지역) 비상연락체계 확인

(7) 행정지원반

-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상황실, 통신시설 설치 등 행정지원

- 비상근무자 복무관리 및 급식지원
- 직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정비
- 비상대책본부 운영시 상황실 설치(PC, 통신시설, 사무집기 등)

라.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지방청	[①-2-2 긴급대응 조치] • 항만내 재박선박·화물보관실태 파악, 재난시설 및 항만시설장비 점검 • 항만별 선박대피 계획 시행, 선박입출항 통제 검토
항만공사	[①-2-2 긴급대응 조치] • 항계 내 대기선박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 • 선박입출항 관리 • 비상 근무체계 점검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①-2-2 긴급대응 조치] • 기상특보 발표시 상황실 근무체계 유지 및 상황근무(1명 이상)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생물안전보호조치(내수면 포함) 지도 • 연근해 출어·조업선 대피제도 및 어선 입·출항 통제지도 • 어항 피해예상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 강화
국립수산과학원	[①-2-2 긴급대응 조치] • 취약시설물 예찰활동, 점검 강화 • 비상 근무체계 점검
국립해양조사원	①-1-3 위기징후 보고 및 전파 <input type="checkbox"/> 조석, 조류 등 바다날씨 정보 제공

3 심 각(또는 비상3단계)

가. 상황

- 본부 비상3단계 시행 권역으로 지정 시 즉시
- 또는 행정안전부 위기경보 ‘심각’ 발령 시, 기상청 예보 기준, 제주지역이 태풍 영향권(강풍 반경 내)에 들기 1^{3단계} 2일 전 상황을 고려하여 부산청 자체 판단 후 시행

나. 조치목록 및 조치내용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피해 및 사전 조치사항 보고 <input type="checkbox"/> 수방자재 점검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 대처계획 수립 및 대처상황 확인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여객선 피항 현황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input type="checkbox"/> 여객선, 잔교 등 고박상태 재확인	선원해사 안전반	각 과(소)·팀	BPA,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재해취약시설 및 수해우려지역 수방대책 추진 점검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분야 재난대응 조치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input type="checkbox"/> 항만 내 화물 양·하역 독려 및 보관화물 반출 촉구 <input type="checkbox"/> 선박대피협의회 개최(여수광양항만공사 협조)	항만물류반	각 과(소)·팀	BPA, ‘퀵’ 운영사 등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유인등대 및 항로표지업무용 선박 현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무인표지(정비원) 비상체계 유지, 항로표지 기능유지 상태 확인	항로표지반	각 과(소)·팀	한국항로표지 기술원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input type="checkbox"/> 항만·어항시설, 항만공사장 등 피해방지 활동 강화 <input type="checkbox"/> 공사 중인 어항 보강자재로 임시 보강 후 장비 및 인력 대피	시설복구반	각 과(소)·팀	건설현장

조치목록	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비상대책본부 운영 ①-3-5 대책본부 회의 <input type="checkbox"/> 대책회의 개최(상황판단회의)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조치목록	⑨-2 오염예방 및 환경관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⑨-2-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input type="checkbox"/> 해양오염대비 현장점검 등 안전조치 지속강화	해양수산 환경반	각 과(소)·팀	해경, 해양환경공단

조치목록	⑪-2 통제 및 질서유지활동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⑪-2-1 재난현장(취약지역) 출입통제 <input type="checkbox"/> 연안여객선 운항통제, 각종 선박 신속대피 유도 <input type="checkbox"/> 선박 입·출항 통제 검토(선박대피협의회 개최)	항만물류반	각 과(소)·팀	BPA, VTS, 해경 등

조치목록	⑦-2 교통대책 강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⑦-2-2 대체교통수단/비상수송수단 가동 <input type="checkbox"/> (태풍통과후) 연안여객선 수송대책 확보	선원해사 안전반	각 과(소)·팀	BPA

조치목록	①-4 재난 및 사고 복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4-2 복구상황 총괄 <input type="checkbox"/> (태풍통과후) 분야별 재난피해상황 취합·보고 <input type="checkbox"/> (태풍통과후) 피해조사반 구성·운영 <input type="checkbox"/> (태풍통과후) 인명피해 발생 시 구조·구급 대책 운영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조치목록	④-1 시설응급복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④-1-3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input type="checkbox"/> (태풍통과후) 방재물자 긴급 반출·지원 <input type="checkbox"/> (태풍통과후) 대형 선박피해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조치 이행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④-1-3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input type="checkbox"/> (태풍통과후) 항로표지 등 항해지원 시설 긴급 복구계획수립	항로표지반	각 과(소)·팀	한국항로표지 기술원
④-1-3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input type="checkbox"/> (태풍통과후)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 등 피해 응급조치	항만물류반	각 과(소)·팀	BPA, '퀵' 터미널 운영사 등
④-1-3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input type="checkbox"/> (태풍통과후) 어항시설 피해 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지시 <input type="checkbox"/> (태풍통과후) 어항시설 피해 복구대책 추진 지시 <input type="checkbox"/> (태풍통과후) 선박 및 항만시설 등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	시설복구반	각 과(소)·팀	건설현장

다. 세부 조치내용

(1) 총괄반

-2-2 긴급대응 조치

- 피해 및 사전 조치사항 보고
- 수방자재 점검

-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 유관기관 대처계획 수립 및 대처상황 확인

- 비상근무자 파악, 비상연락망 정비 확인
- 소속기관장 또는 대리인 정위치 확인
- 수방자재 확보 및 소속 공사현장 비상근무 상태 점검

-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 비상대책본부 운영

- 행동매뉴얼에 따른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에 의거 운영
 - 7개 실무반 운영(상황판단회의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

(총괄반) 5급 1명, 6급이하 1명

(각 실무반) 5급 1명, 6급이하 1명

7개 실무반 전체운영, 전 실무반원 상황실 근무 원칙

(평·휴일) 교대 30분전 합동 근무(인수인계 등)

- 유관기관 등 비상근무실태 확인
- 각 실무반으로부터 정기보고 접수 및 본부 보고
- 본부장 태풍상황보고(매일 09시/필요시)

-3-5 대책본부 회의

- 대책회의 개최(상황판단회의)

- 태풍·호우의 진행경로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등

-4-2 복구상황 총괄

(태풍통과후) 분야별 재난피해상황 취합 보고

(태풍통과후) 피해조사반 구성 운영

(태풍통과후) 인명피해 발생 시 구조구급 대책 운영

-1-3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태풍통과후) 방재물자 긴급 반출 지원

(태풍통과후) 대형 선박피해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조치 이행

(2) 항만물류반

-2-2 긴급대응 조치

재해취약시설 및 수해우려지역 수방대책 추진 점검

- 풍수해대비 재해취약시설 및 수해우려지역 사전점검 결과 추진현황 확인
-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추진실적 확인
- 재해취약시설 및 수해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
- 재해관리카드 정비, 점검자 지정 및 교차 점검자 선정

해양수산분야 재난대응 조치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 항만별 양·하역 실태 및 체화화물 등 항만관리 상황
- 여객선 등 선박입출항 통제 및 선박대피 진행상황(선박대피협의회 개최)
-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 소형어선 등 안전관리 실태
-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결과

항만 내 화물 양·하역 독려 및 보관화물 반출 촉구

선박대피협의회 개최(부산항만공사 협조)

- 대피선박 우선순위 지정 및 기타선박 안전대책 등 협의

-2-1 재난현장(취약지역) 출입통제

연안여객선 운항통제, 각종 선박 신속대피 유도

선박 입출항 통제 검토(선박대피협의회)

-1-3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태풍통과후)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 등 피해 응급조치

(3) 항로표지반

-2-2 긴급대응 조치

유인등대 및 항로표지업무용 선박 현황 파악

○ 3시간 간격 상황 보고 접수

무인표지(정비원) 비상체계 유지, 항로표지 기능유지 상태 확인

-1-3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태풍통과후) 항로표지 등 항해지원 시설 긴급 복구계획수립

(4) 시설복구반

-2-2 긴급대응 조치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항만 어항시설, 항만공사장 등 피해방지 활동 강화

공사 중인 어항 보강자재로 임시 보강 후 장비 및 인력 대피

-1-3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태풍통과후) 어항시설 피해 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지시

(태풍통과후) 어항시설 피해 복구대책 추진 지시

(태풍통과후) 선박 및 항만시설 등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

(5) 선원해사안전반

-2-2 긴급대응 조치

여객선 피항 현황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여객선, 잔교 등 고박상태 재확인

-2-2 대체교통수단/비상수송수단 가동

(태풍통과후) 연안여객선 수송대책 확보

(6) 해양수산환경반

-2-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해양오염대비 현장점검 등 안전조치 지속강화

○ 기름 저장 시설 등의 유류 유출 기능성 모니터 지속

라.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지방청	[①-2-2 긴급대응 조치] • 항계 내 대기선박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 • 선박입출항 관리 • 비상 근무체계 유지 • 태풍 내습전 최종점검 및 관공선 안전관리 [①-4-1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항만시설 피해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항만공사	[①-2-2 긴급대응 조치] • 항만시설 점검 및 항계 내 대기선박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 • 선박입출항 관리 • 비상 근무체계 유지 [①-4-1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태풍통과 후 항만시설 피해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①-2-2 긴급대응 조치] • 기상특보 발표시 상황실 근무체계 유지 및 상황근무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생물안전보호조치(내수면 포함) 지도 • 연근해 출어·조업선 대피계도 및 어선 입·출항 통제지도 • 어항 피해예상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 강화 [①-4-1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수산분야 피해확인 지원
국립수산과학원	[①-2-2 긴급대응 조치] • 조사선 안전관리 강화 • 비상 근무체계 유지 [①-4-1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피해현황 확인 및 응급복구대책 마련
국립해양조사원	①-1-3 위기징후 보고 및 전파 <input type="checkbox"/> 조석, 조류 등 바다날씨 정보 제공

② 대설

1 관 심

가. 상황

- 행정안전부 위기경보 ‘관심’ 발령 시
 - (관심) 대설 빈발 시기(11.15 다음해 3.15)

나. 조치목록과 조치내용

조치목록	①-1 위기징후 관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1-1 위기징후 감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용] <input type="checkbox"/> 대설 안전관리계획 및 시설점검 지시	항만정비과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①-1-5 상황판단회의 <input type="checkbox"/> 상황판단회의(초기상황판단 회의)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 등에 재난대응 조치 전파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4 대책본부 운영준비 <input type="checkbox"/> 재난대비 사전 준비체계 구축	항만정비과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점검			
①-2-7 현장 상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대설 대비 항만 내외 선박 및 화물 안전관리 상태 점검 <input type="checkbox"/> 항만·어항 시설 안전관리 실시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7 현장 상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재난방지 예방실태 현장(재해취약시설 포함) 지도점검 실시	항만물류과	각 과(소)·팀	BPA
①-2-7 현장 상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재난대비 취약요인 사전해소	항로표지과	각 과(소)·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①-2-7 현장 상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선박운항 안전관리 강화대책 강구 <input type="checkbox"/> 항로별 여객선 운항 동정 파악	선원해사안전과	각 과(소)·팀	BP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①-2-4 대책본부 운영준비 <input type="checkbox"/> 직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정비 <input type="checkbox"/> 청사 내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	운영지원과	각 과(소)·팀	—

다. 세부 조치내용

(1) 항만정비과

-1-1 위기징후 감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용]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시설점검 지시

- 소속 및 관계기관 별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 기관별 겨울철 풍수해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 지시

①-1-5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초기상황판단 회의) 개최

상황판단회의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시기	행안부 위기경보 관심 발령에 따라 (필요 시) 개최
회의주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참석	항만정비과장 등
논의 사항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 강설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비상단계발령 등
추진 사항	비상대응 단계(1단계) 결정 및 전파(전자결재 공문)

①-2-4 대책본부 운영준비

□ 재난대비 사전 준비체계 구축

- 겨울철 비상상황 대비 비상근무체제 가동 사항 점검
- 비상대책본부 가동 대비 실무반 별 근무수칙 정비
-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정비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점검

- 비상연락, 유관기관 협조, 비상근무 체계 등 정비

①-2-7 현장 상황 파악

□ 대설 대비 항만 내외 선박 및 화물 안전관리 상태 점검

- 항만 내 재박선박 및 체화화물 안전상태 확인
- 항계 내 대기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항만·어항 시설 안전관리 실시

- 시설물안전법 과 항만법 에 따른 국가관리 항만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 어촌어항법 에 따른 국가어항의 기본시설물 대상 겨울철 대비 점검 실시

(2) 항만물류과

-2-7 현장 상황 파악

재난방지 예방실태 현장(재해취약시설 포함) 지도점검 실시

- 관련분야 합동으로 유관기관 등 이행상황 점검
 - 점검결과 위험용인이 있는 시설물은 가용 예산으로 우기 전 까지 보수보강 등 정비 완료 및 사전 재해응급대책 강구
- * (재해사전대비 기간) 3월부터 5월까지 1회 이상 / (재해기간) 5.15~10.15까지 수시점검

(3) 항로표지과

-2-7 현장 상황 파악

재난대비 취약요인 사전해소

- 유·무인표지 정상 작동유무 점검·정비
- 진행 중인 항로표지 시설공사 공정 파악 및 현장책임자 비상연락 유지

(4) 선원해사안전과

①-2-7 현장 상황 파악

□ 선박운항 안전관리 강화대책 강구

-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선박운항 통제계획 마련
- 항계권 계류선박에 대한 선박대피 계획 수립

□ 항로별 여객선 운항 동정 파악

- 운항중인 선박현황, 선박위치, 승선여객 및 입항예정시간, 여객선 피항지, 여객터미널 정박시 고박 등 피해방지 방안 등

(5) 운영지원과

-2-4 대책본부 운영준비

직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정비

청사 내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

라.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지방청	[①-2-7 현장상황 파악] • 취약시설물 예찰활동, 점검 강화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 비상 근무체계 점검
항만공사	[①-2-7 현장상황 파악] • 선박입출항 관리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 비상 근무체계 점검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①-2-7 현장상황 파악]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생물 안전조치(내수면 포함) 지도·교육
국립수산과학원	[①-2-7 현장상황 파악] • 취약시설물 예찰활동, 점검 강화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 비상 근무체계 점검
국립해양조사원	①-1-3 위기징후 보고 및 전파 <input type="checkbox"/> 조석, 조류 등 바다날씨 정보 제공

2 주의~경계(또는 비상1~2단계)

가. 상황

(1) 비상1단계

- 본부 비상1단계 시행 시 즉시 시행 및 유지
- 행정안전부 위기경보 ‘주의’ 발령 시 부산청 자체 판단 후 시행
 - (주의) 대설 예비특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2) 비상2단계

- 본부 비상2단계 시행 권역으로 지정 시 즉시
- 행정안전부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 부산청 자체 판단 후 시행
 - (경계)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나. 조치목록 및 조치내용

(1) 비상1단계

조치목록	①-1 위기징후 관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1-5 상황판단 회의 <input type="checkbox"/> 상황판단회의 개최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대설 상황 보고 <input type="checkbox"/> 사전대비단계 비상근무체계 가동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간 비상통신망 구축 및 점검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조치목록	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비상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2) 비상2단계

조치목록	①-1 위기징후 관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1-5 상황판단 회의 <input type="checkbox"/> 상황판단회의 개최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대설 상황 보고 <input type="checkbox"/> 사전대비단계 비상근무체계 가동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간 비상통신망 구축 및 점검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①-2-7 현장 상황 파악 <input type="checkbox"/> 현장 방문(피해 우려지역 등 현장 방문)		각 과(소)·팀	

조치목록	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비상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상황실, 통신시설 설치 등 행정지원	행정지원반	각 과(소)·팀	-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항로별 여객선 운항 동정 파악 및 비상연락망 확인 <input type="checkbox"/> 여객선 피항지 지정 및 협의	선원해사 안전반	각 과(소)·팀	BPA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무역항 운영 상황 분석 및 위기 대응 계획 정비 <input type="checkbox"/> 항만 내 재박선박, 하역시설 및 체화화물 안전상태 확인	항만물류반	각 과(소)·팀	BPA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유인등대, 무인표지 점검 및 정비 <input type="checkbox"/> 항로표지업무용 선박(항해선박, 정박선박) 현황 및 대책 수립	항로표지반	각 과(소)·팀	한국항로표지 기술원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항만시설 및 건설현장·장비 대비태세 강화	시설복구반	각 과(소)·팀	건설현장

조치목록	①-2 통제 및 질서유지활동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1 재난현장(취약지역) 출입통제 <input type="checkbox"/> 선박·어선의 대피, 출항 통제 등 실시	항만물류반	각 과(소)·팀	BPA, '퀵' 터미널 운영사 등

다. 세부 조치내용

< 비상1단계 >

(1) 총괄반

-1-5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개최

-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강설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등 대처계획을 논의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시기	행안부 위기경보(경계 발령) 또는 국지적 피해 발생(가능)한 경우 (필요 시) 개최
회의주재	비상대책본부장
참석	총괄반장 등
논의 사항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 강설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비상단계발령 등
추진 사항	비상대응 단계(2단계) 결정 및 전파(전자결재 공문)

-2-2 긴급대응 조치

대설 상황 보고

- 국내외 기상 및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영향가능성,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전파

사전대비단계 비상근무체계 가동

유관기관간 비상통신망 구축 및 점검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 대설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유관기관의 조치사항 점검, 확인

-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비상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본부지시 및 필요시)
 - 24시간 유선대기(단, 본부 및 비상대책본부장의 비상근무 지시가 있을 때는 상황실 근무 실시)
- 총괄반: 5급 1명, 6급이하 1명
- 각 실무반: 6급이하 1명
- 유관기관 등 비상근무실태 확인
- 각 실무반으로부터 정기보고 접수 및 본부 보고
- 본부장 태풍상황보고(매일 09시/필요시)

< 비상2단계 >

(1) 총괄반

-1-5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개최

-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강설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등 대처계획을 논의

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시기	행안부 위기경보(심각 발령) 또는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가능)한 경우 (필요 시) 개최
회의주재	비상대책본부장
참석	총괄반장 등
논의 사항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 강설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비상단계발령 등
추진 사항	비상대응 단계(3단계) 결정 및 전파(전자결재 공문)

-2-2 긴급대응 조치

대설 상황 보고

- 국내외 기상 및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영향가능성,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전파

사전대비단계 비상근무체계 가동

유관기관간 비상통신망 구축 및 점검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 대설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유관기관의 조치사항 점검, 확인

-2-7 현장 상황 파악

현장 방문(피해 우려지역 등 현장 방문)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 비상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본부지시 및 필요시)
 - 7개 실무반 운영(상황판단회의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
- (총괄반) 5급 1명, 6급이하 1명
- (각 실무반) 6급이하 1명
- (평·휴일) 교대 30분전 합동 근무(인수인계 등)
- 유관기관 등 비상근무실태 확인
- 각 실무반으로부터 정기보고 접수 및 본부 보고
- 본부장 태풍상황보고(매일 09시/필요시)

(2) 항만물류반

-2-2 긴급대응 조치

무역항 운영 상황 분석 및 위기 대응 계획 정비

- 항만 내 재박 선박·화물보관 실태파악, 재난시설 및 항만시설장비 등 점검, 소속기관별 운영 검토
- 항만별 선박대피 계획 시행, 선박입출항 통제 검토 추진

항만 내 재박선박, 하역시설 및 체화화물 안전상태 확인

- 하역시설 고박 및 화물고박 현황 파악
- 컨테이너 단수 조정 및 필요 시, 이동조치

-2-1 재난현장(취약지역) 출입통제

선박 어선의 대피, 출항 통제 등 실시

- 필요시 선박대피협의체 개최 및 선박입출항 통제 검토

(3) 항로표지반

-2-2 긴급대응 조치

유인등대, 무인표지 점검 및 정비

- 비상발전기 시운전 및 유류확보 및 항로표지 고시기능 유지
- 항로표지 예비품 현황 파악

항로표지업무용 선박(항해선박, 정박선박) 현황 및 대책 수립

- 기상정보 파악 및 통신망 유지, 항만상황 파악
- 선체·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철저

(4) 시설복구반

-2-2 긴급대응 조치

항만시설 및 건설현장·장비 대비태세 강화

- 항만·어항 시설물, 대형 공사장 등의 위험 유발 시설물의 예찰활동 및 점검 강화를 통해 재해 위험요소의 제거

(5) 선원해사안전반

-2-2 긴급대응 조치

항로별 여객선 운항 동정 파악 및 비상연락망 확인

- 운항중인 선박 현황, 위치, 승선여객 및 입항예정시간 등 여객선 피항지 지정 및 협의
- 피항지 선정, 여객터미널 정박시 고박 등 피해방지 방안

(6) 행정지원반

-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상황실, 통신시설 설치 등 행정지원

- 비상근무자 복무관리 및 급식지원
- 직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정비
- 비상대책본부 운영시 상황실 설치(PC, 통신시설, 사무집기 등)

라.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지방청	[①-2-2 긴급대응 조치] • 항만내 재박선박·화물보관실태 파악, 재난시설 및 항만시설장비 점검
항만공사	[①-2-2 긴급대응 조치] • 항계 내 대기선박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 • 선박입출항 관리 • 비상 근무체계 점검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①-2-2 긴급대응 조치] • 기상특보 발표시 상황실 근무체제 유지 및 상황근무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생물안전보호조치(내수면 포함) 지도 • 연근해 출어·조업선 대피제도 및 어선 입·출항 통제지도 • 어항 피해예상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 강화
국립수산과학원	[①-2-2 긴급대응 조치] • 취약시설물 예찰활동, 점검 강화 • 비상 근무체계 점검
국립해양조사원	①-1-3 위기정후 보고 및 전파 <input type="checkbox"/> 조석, 조류 등 바다날씨 정보 제공

3 심 각(또는 비상3단계)

가. 상황

- 본부 비상3단계 시행 권역으로 지정 시 즉시
- 행정안전부 위기경보 ‘심각’ 발령 시 부산청 자체 판단 후 시행
 - (심각)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비상대책본부 3단계)

나. 조치목록 및 조치내용

조치목록	①-2 대응 조치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대설상황 보고 <input type="checkbox"/> 피해 및 사전 조치사항 보고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 대처계획 수립 및 대처상황 확인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점검 및 확인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분야 재난대응 조치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input type="checkbox"/> 항만 내 화물 양·하역 독려 및 보관화물 반출 촉구	항만물류반	각 과(소)·팀	BPA
①-2-2 긴급대응 조치 <input type="checkbox"/>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input type="checkbox"/> 항만·어항시설, 항만공사장 등 피해방지 활동 강화 <input type="checkbox"/> 공사 중인 어항 보강자재로 임시 보강 후 장비 및 인력 대피	시설복구반	각 과(소)·팀	건설현장

조치목록	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비상대책본부 운영 ①-3-5 대책본부 회의 <input type="checkbox"/> 대책회의 개최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조치목록	①-2 통제 및 질서유지활동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2-1 재난현장(취약지역) 출입통제 <input type="checkbox"/> 연안여객선 운항통제, 각종 선박 신속대피 유도 <input type="checkbox"/> 선박 입·출항 통제 검토(선박대피협의회 개최)	항만물류반	각 과(소)·팀	BPA, VTS, 해경 등

조치목록	①-4 재난 및 사고 복구		
조치내용	주관부서	지원부서	협업기관
①-4-2 복구상황 총괄 <input type="checkbox"/> (대설직후) 분야별 재난피해상황 취합·보고 <input type="checkbox"/> (대설직후) 피해조사반 구성·운영 <input type="checkbox"/> (대설직후)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체계 가동 <input type="checkbox"/> (대설직후) 인명피해 발생 시 구조·구급 대책 운영	총괄반	각 과(소)·팀	기상청, BPA, 부산시 등

다. 세부 조치내용

(1) 총괄반

-2-2 긴급대응 조치

대설 상황 보고

- 국내외 기상 및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영향가능성,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전파

피해 및 사전 조치사항 보고

-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유관기관 대처계획 수립 및 대처상황 확인

- 비상근무자 파악, 비상연락망 정비 확인
- 소속기관장 또는 대리인 정위치 확인
- 재설자재 확보 및 소속 공사현장 비상근무 상태 점검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점검 및 확인

-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 및 통신체계 확인
- 지원 가능한 자재, 인력, 장비 등 확인

-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비상대책본부 운영

- 행동매뉴얼에 따른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에 의거 운영

- 7개 실무반 운영(상황판단회의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

능)

(총괄반) 5급 1명, 6급이하 1명

(각 실무반) 5급 1명, 6급이하 1명

7개 실무반 전체운영, 전 실무반원 상황실 근무 원칙

(평·휴일) 교대 30분전 합동 근무(인수인계 등)

- 유관기관 등 비상근무실태 확인
- 각 실무반으로부터 정기보고 접수 및 본부 보고
- 본부장 태풍상황보고(매일 09시/필요시)

-3-5 대책본부 회의

대책회의 개최

-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강설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등 대처계획을 논의

-4-2 복구상황 총괄

(대설직후) 분야별 재난피해상황 취합 보고

(대설직후) 피해조사반 구성 운영

(대설직후)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체계 가동

(대설직후) 인명피해 발생 시 구조구급 대책 운영

(2) 항만물류반

-2-2 긴급대응 조치

해양수산분야 재난대응 조치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 항만별 양·하역 실태 및 체화화물 등 항만관리 상황
- 여객선 등 선박입출항 통제 및 선박대피 진행상황(선박대피협의회 개최)
-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 소형어선 등 안전관리 실태
-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결과

항만 내 화물 양·하역 독려 및 보관화물 반출 촉구

-2-1 재난현장(취약지역) 출입통제

연안여객선 운항통제, 각종 선박 신속대피 유도

선박 입출항 통제 검토(선박대피협의회 개최)

(3) 시설복구반

-2-2 긴급대응 조치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항만어항시설, 항만공사장 등 피해방지 활동 강화

공사 중인 어항 보강자재로 임시 보강 후 장비 및 인력 대피

라.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지방청	①-2-2 긴급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근무체계 유지 [①-4-1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피해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
항만공사	[①-2-2 긴급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 내 대기선박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 • 선박입출항 관리 • 비상 근무체계 유지 [①-4-1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피해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①-2-2 긴급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특보 발표시 상황실 근무체계 유지 및 상황근무(1명 이상)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생물안전보호조치(내수면 포함) 지도 • 연근해 출어·조업선 대피계도 및 어선 입·출항 통제지도 • 어항 피해예상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 강화 [①-4-1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분야 피해확인 지원
국립수산과학원	①-2-2 긴급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선 안전관리 강화 • 비상 근무체계 유지 [①-4-1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황 확인 및 응급복구대책 마련
국립해양조사원	①-1-3 위기징후 보고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조석, 조류 등 바다날씨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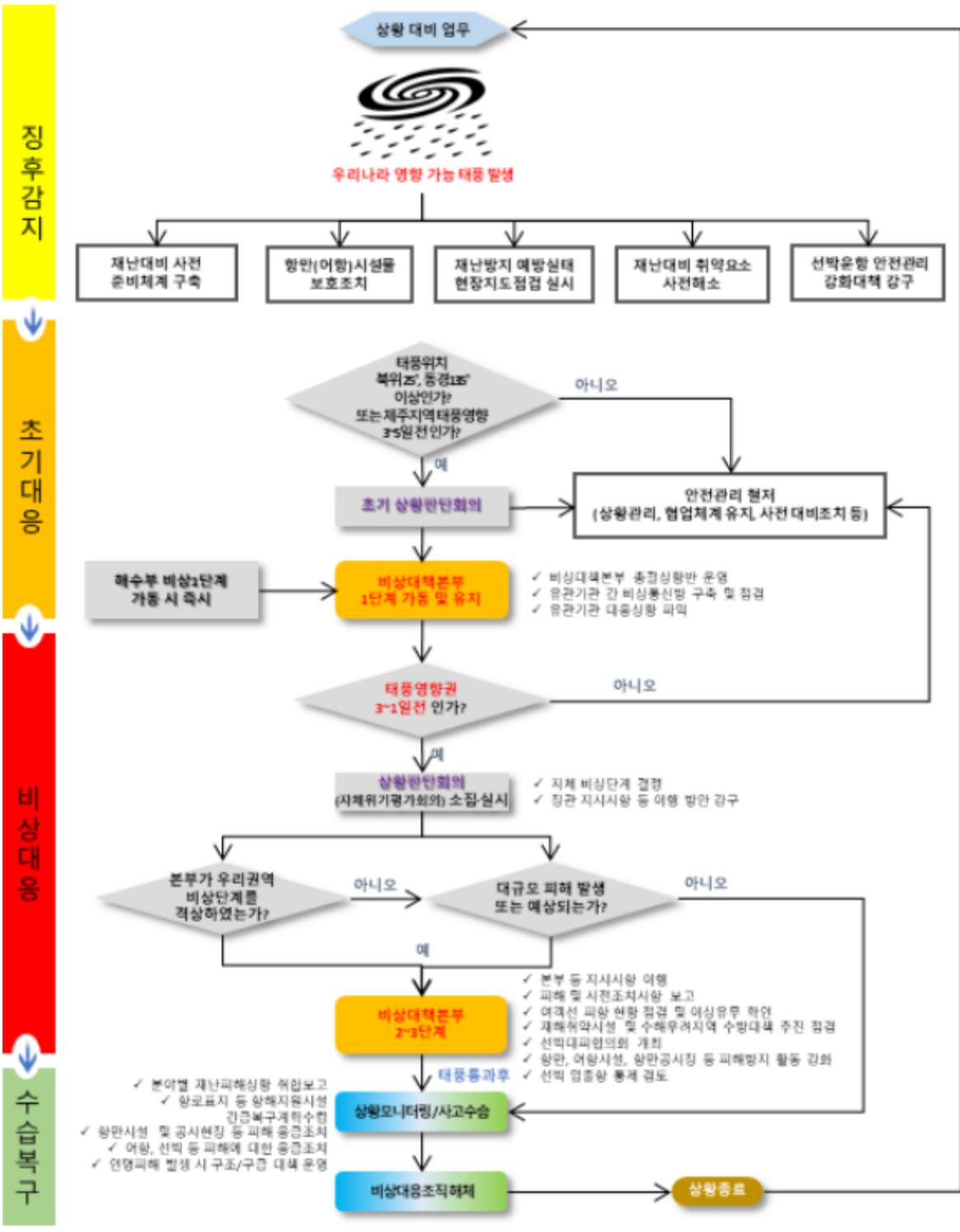
IV

재난대응절차 및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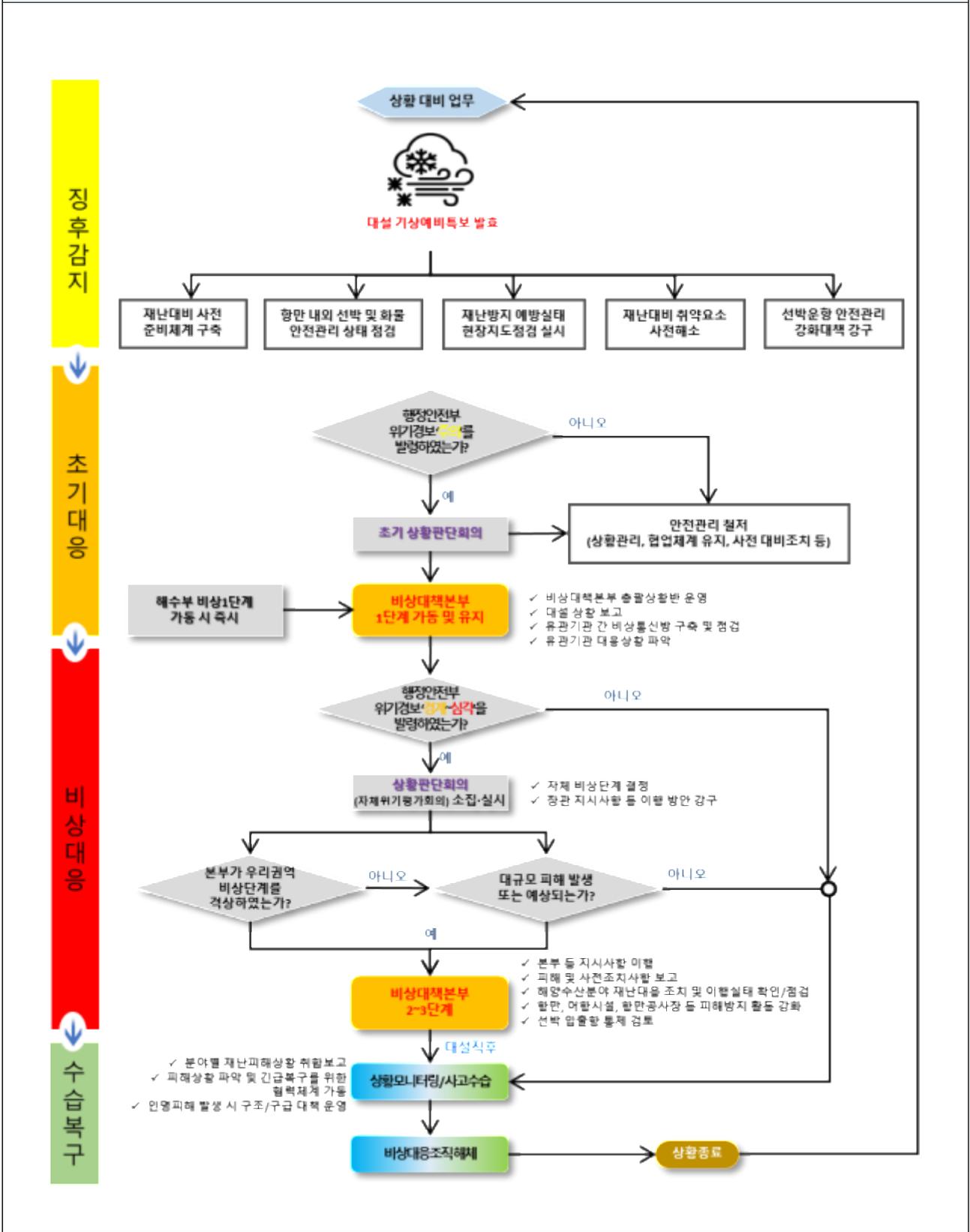
IV. 재난대응절차 및 프로세스

1 재난대응 절차도

태풍·호우 대응 절차도



대설 대응 절차도



2 재난대응 단계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 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비(특별)대책 ○ 태풍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발생 시 우리나라 영향 여부 검토, 호우·대설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 검토 	- 관심
초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우리나라 영향 가능 ○ (호우·대설)기상특보 발효 또는 피해예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호우/대설주의보·경보가 발표되거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취하는 예방조치 	관심 주의
비상 대응	[비상대책본부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25°N+135°E 이내 도달 또는 제주 태풍영향권 3~5일 전 ○ (호우·대설)위기경보 주의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을 때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피해에 대응하는 조치 	주의 경계 심각
	[비상대책본부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태풍영향 2~3일전 ○ (호우·대설) 위기경보 경계발령 		
	[비상대책본부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태풍영향 1~2일전 ○ (호우·대설) 위기경보 심각발령 		
수습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시설 피해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장상황을 수습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취하는 임시적인 복구 조치 	경계 심각

태풍·호우

구분	1~2 단계	정후 감지 초기 대응				3단계	비상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0	0					0	0					0			0	0		
초기 대응 부서	당직실 (야간 및 휴일)	<p>[①-1-3 위기정후 보고 및 전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6하원칙에 따라 기본적 상황 파악 및 추가정보 입수, 추가정보 추보 실시 등 □ 보고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담당 과(소) 또는 당직실 사고 접수 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해경 등에 신속 보고(전파) 				<p>[①-3-2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접수 시 사고상황 확인 및 보고·전파 즉시 시행 - 당직자는 정후 접수 즉시 사고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통보 *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 동시에 해경에 인명구조 요청 (필요 시) □ 사고보고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장 보고 원칙 - 사고담당 과(소) 또는 당직실에서는 정후 접수 후 청장, 울산청 당직실, 담당과(소),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해경 등에 신속 보고(전파) 				<p>[①-3-2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접수 시 사고상황 확인 및 보고·전파 즉시 시행 - 당직자는 정후 접수 즉시 사고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통보 *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 동시에 해경에 인명구조 요청 (필요 시) □ 사고보고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장 보고 원칙 - 사고담당 과(소) 또는 당직실에서는 정후 접수 후 청장, 울산청 당직실, 담당과(소),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해경 등에 신속 보고(전파) 										
		사고 주관부서 (항만 정비과)	<p>[①-1 위기정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1-1] 위기정후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시설점검 지시 [①-1-5] 상황판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p>[①-2 대응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2-4] 대책본부 운영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비 사전 준비체계 구축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점검 [①-2-7] 현장 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어항)시설물 보호조치 				<p>[①-1 위기정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1-5] 상황판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p>[①-2 대응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2-2] 긴급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 상황 예측 - 호우 상황 파악 - 사전대비단계 비상근무체계 가동 - 유관기관간 비상통신망 구축 및 점검 -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p>[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p>[①-1 위기정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1-5] 상황판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p>[①-2 대응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2-2] 긴급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 상황 예측 - 호우 상황 파악 - 사전대비단계 비상근무체계 가동 - 유관기관간 비상통신망 구축 및 점검 -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①-2-7] 현장 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문(피해 우려 지역 등 현장 방문) <p>[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p>[①-2 대응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2-2] 긴급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및 사전 조치사항 보고 - 수방자제 점검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대처계획 수립 및 대처상황 확인 <p>[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책본부 운영 [①-3-5] 대책본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회의 개최(상황판단회의) 				<p>[①-4 재난 및 사고 복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4-2] 복구상황 총괄 (태풍통과후) 분야별 재난피해상황 취합·보고 (태풍통과후) 피해조사반 구성·운영 (태풍통과후) 인명피해 발생 시 구조·구급 대책 운영 <p>④-1 시설응급복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1-3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태풍통과후) 방재물자 긴급 반출·지원 (태풍통과후) 대형 선박피해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조치 이행 					

구분	1~2 단계	징후 감지 초기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청 장	위기징후 확인 <input type="checkbox"/> 초기징후 확인 조치사항 지시 <input type="checkbox"/> (필요시) 긴급조치 지시 ○ 현장 지휘체계 확립 ○ 인명피해 최소화방안 강구 ○ 2차 피해 확산방지대책 강구		0				초기상황 확인 <input type="checkbox"/> 초기상황 확인(보고 : 상황총괄반장) ○ 피해현황 및 현장 대응상황 파악 ○ 유관기관 및 산하단체 등과 유선통화 ○ 추가상황 파악 초기대응 점검 및 조치사항 <input type="checkbox"/> 자체위기관리회의 결과점검 ○ 현재까지 상황진단 및 대처상황 점검 <input type="checkbox"/> 상황판단회의 주재(청장 부재 시 항만건설과장) <input type="checkbox"/> (필요시) 사고현장 방문 및 대응상황 점검		0	0			비상대책본부 운영 <input type="checkbox"/> 비상대책본부 설치 지시 및 사고수습 총괄 지휘 <input type="checkbox"/> 사고현장 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input type="checkbox"/> 비상대책본부 운영 현황 점검 및 대책 지시 <input type="checkbox"/> 과장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원 필요사항 검토·지원 <input type="checkbox"/> 주요인사 현장방문시 수행 및 사고수습상황 브리핑					0				<input type="checkbox"/> 풍수해 대처 재난복구 협력 총괄지휘 <input type="checkbox"/> 위기경보 및 비상대책본부 해체 결정 <input type="checkbox"/> (필요시) 현장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 사고수습 협력		
선원해사안전반	[①-2 대응조치] [①-2-7] 현장 상황 파악 - 선박운항 안전관리 강화대책 강구 - 항로별 여객선 운항 동정 파악						[①-2 대응조치] [①-2-2] 긴급대응 조치 - 항로별 여객선 운항 동정 파악 및 비상연락망 확인 - 여객선 피항지 지정 및 협의 - 여객선터미널, 접안시설 등 시설 점검						[①-2 대응조치] [①-2-2] 긴급대응 조치 - 여객선 피항 현황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여객선, 잔교 등 고박상태 재확인						[⑦-2 교통대책 강구] [⑦-2-2] 대체교통수단/비상수송수단 가동 - (태풍통과후) 연안여객선 수송대책 확보					
해양수산환경반	[⑨-2 오염예방 및 환경관리] [⑨-2-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 해양오염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설(피해우려지역) 비상연락체계 확인						[⑨-2 오염예방 및 환경관리] [⑨-2-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 해양오염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설(피해우려지역) 비상연락체계 확인						[⑨-2 오염예방 및 환경관리] [⑨-2-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 해양오염대비 현장점검 등 안전조치 지속강화											
항만물류반	[①-2 대응조치] [①-2-7] 현장 상황 파악 - 재난방지 예방실태 현장(재해취약시설 포함) 지도점검 실시						[①-2 대응조치] [①-2-2] 긴급대응 조치 - 무역항 운영 상황 분석 및 위기 대응 계획 정비 - 항만 내 재박선박, 하역 시설 및 체화화물 안전 상태 확인 [⑩-2 통제 및 질서유지 활동] [⑩-2-1] 재난현장(취약시설) 출입통제 - 선박·어선의 대피, 출항 통제 등 실시						[①-2 대응조치] [①-2-2] 긴급대응 조치 - 재해취약시설 및 수해우려지역 수방대책 추진 점검 - 해양수산분야 재난대응 조치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 항만 내 화물 양·하역 독려 및 보관화물 반출 촉구 - 선박대피협의회 개최(여수광양항만공사 협조) [⑩-2 통제 및 질서유지 활동] [⑩-2-1] 재난현장(취약시설) 출입통제 - 연안여객선 운항통제, 각종 선박 신속대피 유도 - 선박 입·출항 통제 검토(선박대피협의회 개최)					[④-1 시설응급복구] [④-1-3]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 (태풍통과후)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 등 피해 응급조치						
항로표지반	[①-2 대응조치] [①-2-7] 현장 상황 파악 - 재난대비 취약요인 사전해소						[①-2 대응조치] [①-2-2] 긴급대응 조치 - 유인등대, 무인표지 점검 및 정비 - 항로표지업무용 선박 현황 및 대책 수립						[①-2 대응조치] [①-2-2] 긴급대응 조치 - 유인등대 및 항로표지업무용 선박 현황 파악 - 무인표지(정비원) 비상체계 유지, 항로표지 기능유지 상태 확인					[④-1 시설응급복구] [④-1-3]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 (태풍통과후) 항로표지 등 항해지원 시설 긴급 복구계획 수립						
운영지원반	[①-2 대응조치]						[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																	

	<p>[①-2-4] 대책본부 운영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정비 - 청사 내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 		<p>등</p> <p>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통신시설 설치 등 행정지원 		
<p>시설복구반</p>	<p>-</p>		<p>[①-2 대응조치]</p> <p>[①-2-2] 긴급대응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및 건설현장·장비 대비태세 강화 - 항만(어항)시설물 재난 예방대책 시행 	<p>[①-2 대응조치]</p> <p>[①-2-2] 긴급대응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 항만·어항시설, 항만공사장 등 피해방지 활동 강화 - 공사 중인 어항 보강자재로 임시 보강 후 장비 및 인력 대피 	<p>[④-1 시설응급복구]</p> <p>[④-1-3]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통과후) 어항시설 피해 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지시 - (태풍통과후) 어항시설 피해 복구대책 추진 지시 - (태풍통과후) 선박 및 항만시설 등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

* 각 과는 필요시 사고 주관부서 업무 지원 및 고유 업무(사고 관련) 수행, 청장지시에 따라 비상대응 임무 수행한다.

대설

구 분	1~2 단계	정후 감지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0						0	0					0				0	0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초기 대응 부서	당직실 (야간 및 휴일)	[①-1-3 위기정후 보고 및 전파] <input type="checkbox"/> 접수 - 가능한 6하원칙에 따라 기본적 상황 파악 및 추가정보 입수, 추가정보 추보 실시 등 <input type="checkbox"/> 보고 및 전파 - 사고담당 과(소) 또는 당직실 사고 접수 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해경 등에 신속 보고(전파)				[①-3-2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 <input type="checkbox"/> 사고접수 - 재난상황 접수 시 사고상황 확인 및 보고·전파 즉시 시행 - 당직자는 정후 접수 즉시 사고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통보 ※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 동시에 해경에 인명구조 요청 (필요 시) <input type="checkbox"/> 사고보고 및 전파 - 소관부서장 보고 원칙 - 사고담당 과(소) 또는 당직실에서는 정후 접수 후 청장, 울산청 당직실, 담당과(소),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해경 등에 신속 보고(전파)				[①-3-2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 <input type="checkbox"/> 사고접수 - 재난상황 접수 시 사고상황 확인 및 보고·전파 즉시 시행 - 당직자는 정후 접수 즉시 사고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통보 ※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 동시에 해경에 인명구조 요청 (필요 시) <input type="checkbox"/> 사고보고 및 전파 - 소관부서장 보고 원칙 - 사고담당 과(소) 또는 당직실에서는 정후 접수 후 청장, 울산청 당직실, 담당과(소),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해경 등에 신속 보고(전파)										
		사고 주관부서 (항만 정비과)	[①-1 위기정후 관리] [①-1-1] 위기정후 감시 -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시설점검 지시 [①-1-5]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개최 [①-2 대응조치] [①-2-4] 대책본부 운영준비 - 재난대비 사전 준비체계 구축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점검 [①-2-7] 현장 상황 파악 - 대설 대비 항만 내외 선박 및 화물 안전관리 상태 점검 - 항만·어항 시설 안전관리 실시				[①-1 위기정후 관리] [①-1-5]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개최 [①-2 대응조치] [①-2-2] 긴급대응 조치 - 대설 상황 보고 - 사전대비단계 비상근무체계 가동 - 유관기관간 비상통신망 구축 및 점검 -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 비상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①-1 위기정후 관리] [①-1-5]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개최 [①-2 대응조치] [①-2-2] 긴급대응 조치 - 대설 상황 보고 - 사전대비단계 비상근무체계 가동 - 유관기관간 비상통신망 구축 및 점검 - 유관기관 대응상황 파악 [①-2-7] 현장 상황 파악 - 현장 방문(피해 우려 지역 등 현장 방문) [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 비상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①-2 대응조치] [①-2-2] 긴급대응 조치 - 대설 상황 보고 - 피해 및 사전 조치사항 보고 [①-2-5] 유관기관 협조체계-대비상황 점검 - 유관기관 대처계획 수립 및 대처상황 확인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점검 및 확인 [①-3 상황실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 [①-3-4]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 비상대책본부 운영 [①-3-5] 대책본부 회의 - 대책회의 개최(상황판단회의)				[①-4 재난 및 사고 복구] [①-4-2] 복구상황 총괄 - (대설직후) 분야별 재난피해상황 취합·보고 - (대설직후) 피해조사반 구성·운영 - (대설직후)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체계 가동 - (대설직후) 인명피해 발생 시 구조·구급 대책 운영	

구분	1~2 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청 장	0				0	0			0				0			
선원해사안전반																
해양수산환경반																
항만물류반																
항로표지반																
운영지원반																
시설복구반																

* 각 과는 필요시 사고 주관부서 업무 지원 및 고유 업무(사고 관련) 수행, 청장지시에 따라 비상대응 임무 수행한다.

구분	1단계	정후 감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0							0							0	0					0	0
해양경찰청 [지방해양청(서) 및 관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합정, 항공기, 중앙특수구조단 등 대응체계 유지 해상교통관계 강화 소방·제난의료지원팀·자치단체 합동훈련 사전대비·대응태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통신망(PS-LTE) 송수신 체계 유지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 및 구조인력, 장비 등 확인 사망자 신원확인 등에 대한 수사계획 검토 접경해역(중국·일본 등과의 접경해역과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복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국방부·통일부에 복측 협조통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해상교통관계 강화 사전대비·대응태세 점검 경비합정, 항공기, 중앙특수구조단 등 대응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통신망(PS-LTE) 송수신 체계 유지 구조세력 긴급출동 조치 및 현장 구조활동 전개 소방·제난의료지원팀·자치단체 합동훈련 (필요시) 관계기관 현장지원 세력(선박 등) 현황 파악, 구조 유관 기관 지원요청 사망자 신원확인 등에 대한 수사계획 상세 검토 (필요시) 접경해역에서는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복측 등에 상황 통보 또는 수색구조 협조요청 및 관계기관 공유(해수부·해양청 등의 요청에 의거 복측 협조통신 시행)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자 이송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 점검 사고수습 상황실, 인력, 차량 등 행정적 지원체계 점검 사전대비·대응태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통신망(PS-LTE) 송수신 체계 유지 피해자 가족 관리 및 지원체계 확인 사고수습 상황실, 인력, 차량(앰블런스) 등 행정적 지원계획 검토 인근 병원, 장례식장 현황 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자 이송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 점검 피해자 가족 관리 및 지원체계 점검 사고수습 상황실, 인력, 차량(앰블런스) 등 행정적 지원 준비(안전 취약계층 대책 포함) 사전대비·대응태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통신망(PS-LTE) 송수신 체계 유지 (필요시) 비상근무체계 사전 준비 및 점검 (필요시) 인근 병원, 장례식장 현황 등 확인 																							
어업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지도선을 통한 해양사고 상황접수 해양 선박사고 종합상황실 및 유관기관 전파 기상특보 대비 어업 관련 사전점검 및 지도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필요시, 위협해역 인근 안전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지도선 등을 통한 조업어선 안전조치 재난정후 파악, 보고 및 초동조치 이행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 																							
국립해양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해역 해양관측 및 예측(조석, 조류 등) 활동 강화 사고예상지점 측량자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예상 지역 해양관측 및 예측(조석, 조류 등) 활동 집중 실시 사고예상지점 측량자료 상세 검토 사고위험 해역 항행경보 발령 등 																							
국립수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급구조 및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해도 제공 사고해역 조석, 조류 등 해양관측 정보 제공 3차원 해저지형도 등 사고해역 수로측량 정보 제공(필요시) 사고위험 해역 항행경보 발령 및 항행통보 지속 실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름, 화학물질 등 유출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여부 및 어장 및 양식장 오염 등 2차 피해 가능성 조사 사고 발생지역 수산자원조사, 연안 어장환경 모니터링 등 정밀 조사 지속 실시 시험조사선 종합상황실 운영(24시간), 본부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등 																							
중앙해양 안전심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대비·대응태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통신망(PS-LTE) 송수신 체제 유지 ○ 사고현장 인근 질서유지, 해안수색 지원 계획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대비·대응태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통신망(PS-LTE) 송수신 체제 유지 ○ 사고현장 인근 질서유지, 해안수색 지원 계획 상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인근 교통통제, 병원, 시신 안치소 등 질서 유지, 해안수색 지원 ○ 재난지역 긴급차량 이동(DMAT 등) 최우선 지원 등 교통통제 ○ 사망자 등 신원 파악 ○ 재난현장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긴급통신체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인근 교통통제 등 질서 유지, 해안수색 지원 ○ 사망자 신원확인 계속 및 유언비어 수사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예방 교육 및 출어선 안전지도, 홍보방송 실시 ○ 사고대비 어업피해 대책반 운영체제 구축·운영계획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확인 및 점검 ○ 어선 안전조업 모니터링 강화 ○ 사고예방 교육 및 출어선 안전지도, 홍보방송 실시 ○ 사고대비 어업피해 대책반 운영체제 구축·운영 계획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어선 안전지도 및 홍보방송 실시 ○ 출어선 안전 해역으로 대피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어선 안전지도 및 홍보(안전)방송 실시 ○ 출어선 안전 해역으로 대피제도 등
한국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위험 선박 검사이력 확인 ○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상황 전파 ○ ERS(긴급응답서비스) 긴급 대책반 구성 검토 ○ 사고 / 손상 조사 및 기술검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위험 선박 검사이력 확인 ○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상황전파 ○ ERS(긴급응답서비스) 긴급 대책반 구성 검토 ○ 사고 / 손상 조사 및 기술검토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상황 전파 ○ 사고 / 손상 조사 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평가 및 분석, 구난 대책 수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상황전파 ○ 사고·손상 조사 기술 지원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고상황 접수·전파(해양사고예방센터) ○ 연안여객선 사고상황 접수·전파(운항관리실)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 및 수협으로부터 통보된 해양사고 보고서를 통한 사고유형 분석(위기 징후 감지) ○ 인근 운항 여객선에 정보제공 ○ 선박안전기술 관련 정보(선박검사 이력) 제공 등 ○ 해운조합·선사 등을 통한 승선자 현황 파악·보고 ○ 연안여객선 운항 모니터링, 출항전 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합동상황반 구성·운영 ○ 선박안전기술 관련 정보(선박검사 이력) 제공 등 ○ 인근 운항 여객선에 정보제공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 운항관리자 파견 및 수습 지원 등 해양 사고 상황에 따른 정부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 운항관리자 파견 및 수습 지원 등 해양 사고 상황에 따른 정부활동 지원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	○ (요청시) 위성자료 분석 및 결과통보	○ (필요시) 확보가능한 사고인근해역 광학위성자료 분석 및 결과제공	○ (필요시) 확보가능한 사고인근해역 광학위성자료 분석 및 결과제공
한국해운조합	○	○	○ 사고 연안여객선의 승선자 세부현황, 화물·보험 현황 등을 구조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공	○ 사고 연안여객선의 승선자 세부현황, 화물·보험 현황 등을 구조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공
부산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내 사고 취약시설 등 정비·점검 ○ 수습·복구 인력·장비 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확인 및 점검 ○ 항만 내 사고 취약시설 등 정비·점검 강화 ○ 수습·복구 인력·장비·물자 점검 및 출동태세 확인 	○ 항만 내 피해발생에 따라 수습 및 복구 인력·장비 긴급 투입	○ 수습 및 복구 인력·장비 투입
해양환경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사고 등 초동대응에 동원 가능한 장비·인력 등 현황 확인 및 필요시 긴급 방제(구조)세력 현장 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 발생시 방제 초동조치 ○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선박 화재시 예선(소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 발생시 방제 초동조치 ○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선박 화재시 예선(소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 발생시 방제 초동조치 ○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선박 화재시 예선(소방) 지원
한국 해사위험물검사원		○ 필요시 유해물질, 위험물 등 특수화물 관련 사고발생시 합동현장 확인 및 자문	○ 필요시 유해물질, 위험물 등 특수화물 관련 사고발생시 합동현장 확인 및 자문	○ 필요시 유해물질, 위험물 등 특수화물 관련 사고발생시 합동현장 확인 및 자문

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서별 협업기능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③ 긴급 통신지원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기능 복구	⑥ 재난자원 지원	⑦ 교통대책
주관부서	항만정비과	-	-	항만개발과, 계획조사과, BPA 등	-	항만물류과 등	항만물류과, 항만개발과, 계획조사과 등
연계부처	본부 해사안전관리과, 부산항만공사, 기상청 등	지자체 등	KT, SKT 등 정보통신 운영사	지자체 등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지자체, 군부대 등	부산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등
주요 업무	<p><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상황 파악·전파 및 보고(청·소장, 유관기관 등) BPA, 유관기관 등 비상 연락망 유지 전 직원 비상소집 및 상황점검회의 개최 상황점검회의에 따른 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 비상대책본부 근무자 배치 및 상황실 설치요청, 근무조 편성 위기경보 발령·전파 및 경보단계 조정 또는 해제 	<p><재난발생지역 주민 구호, 세제금융지원 등 생활안정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민 발생 파악·관리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 구호물자 지원 재해구호기금 활용, 이재민 구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이재민들이 학교시설 이용 시 생필품, 취사도구 등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부족물자 확보 지원 재난지원금, 의연금 등 지원 	<p><재난현장 구조·수습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시설 파손 및 통신두절 현황 파악 및 상황관리 통신두절지역 신속한 긴급통신 체계 가동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긴급통신장비 보급 등 통신자원 공동활용 관계기관 지원현황 파악 및 관리 	<p><피해시설 응급복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 현황 파악 재해발생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동원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피해지역 군·경·민간 등 보유인력·장비의 지원체계 가동 	<p><전기 공급시설 기능 회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전기·가스·유류) 공급시설 피해상황 파악 피해지역 광역 복구 지원체계 가동 현황 파악 인명구조 현장 및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침수지역 감전사고·가스누출·폭발 등 2차 피해예방 활동 	<p><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군부대 협력체계 가동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p><재난발생지역 교통소통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해역 선박운항상황 파악 섬주민 생계지원을 위한 대체선박 투입 및 우회항로 확보 등 통항 해소시기 예측 관리

기능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⑩ 자원봉사관리	⑪ 사회질서유지	⑫ 수색,구조,구급	⑬ 재난수습홍보
주관부서	해양수산환경과, 항만물류과 등	해양수산환경과 등	항만물류과 등	항만물류과 등	항만물류과, 선원해사안전과	운영지원과
연계부처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보건소 및 의료기관	해양환경공단 등	지자체 등	경찰청 등	해양경창청, 군부대, 소방청 등	방송, 신문사 등 언론사
주요 업무	<p><재난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전염병 방역서비스 지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반 및 분류반 가동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응급환자 수송헬기 지원, 군의관 응급환자 치료지원 현장의료소 방역실시 및 편의제공 지역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 정보제공 및 시신안치 등 협의 	<p><재난현장 쓰레기·환경오염물질 처리 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수해 발생에 따른 해양오염 물질 종류, 특성, 유출량, 확산범위 등 파악 및 긴급방제 실시 항만시설 등 풍수해 발생지역 해상의 부유물 및 해상 쓰레기 수거 	<p><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 민간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p><교통통제, 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호우 피해지역 주민긴급대피 지원 사상자 신원 등 현황파악 피해발생 및 우려 지역의 출입통제 실시 및 치안유지 교통 통제지역 파악·보고 	<p><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피해 발생시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필요시 긴급구조통제단 협조가동(인명구조 및 사상자 응급조치 등) 지자체 소방본부 주요 현장대응 활동사항 점검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활동 지원 	<p><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방송사에 대한 자막방송 요청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대책본부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

5 비상연락망

가. 지방자치단체 비상연락망

기관	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02-2133-3865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051-888-2967
대구광역시	자연재난과	053-803-2654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	032-440-3353
광주광역시	재난대응과	062-613-4962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	042-270-5973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	052-229-415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과	044-300-3216
경기도	자연재난과	031-8008-3661
강원도	방재과	033-249-2916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043-220-2457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041-635-3252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063-280-3006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061-286-3721
경상북도	자연재난과	054-880-2355
경상남도	재난대응과	055-211-2825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064-710-3942

나. 해양수산부 비상연락망

(1) 지방해양수산청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1-609-6212	051-609-6219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543	051-609-6529	
	항만정비과	051-609-6784	051-609-6779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647	064-720-2644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32-880-6414	032-882-4642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	032-884-3564	
	항만정비과	032-880-6322	032-880-6375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61-650-6011	061-654-2353	
	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47	061-654-2456	
	항만건설과	061-650-6148	061-654-2564	
	어항건설과	061-650-6162	061-654-2211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5-981-5022	055-245-0885	
	선원해사안전과	055-981-5082	055-242-1260	
	항만건설과	055-981-5231	055-242-1259	
	어항건설과	055-981-5280	055-244-1260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2-228-5551	052-228-5549	
	선원해사안전과	052-228-5582	052-228-5559	
	항만건설과	052-228-5661	052-228-5699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33-520-6117	033-520-6110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7	033-520-6140	
	항만건설과	033-520-6256	033-520-6250~54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63-441-2222	063-441-2351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352	063-441-2352	
	항만건설과	063-441-2282	063-441-2355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61-280-1612	061-280-1616	
	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46	061-280-1655	
	항만건설과	061-280-1688	061-280-1690	
	어항건설과	061-280-1753	061-280-1763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4-245-1512	054-245-1649	
	선원해사안전과	054-245-1523	054-242-1326	
	항만건설과	054-245-1548	054-245-1546	
	어항건설과	054-245-1631	054-245-1639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31-680-7218	031-680-7219	
	선원해사안전과	031-680-7224	031-680-7229	
	항만건설과	031-680-7260	031-680-7259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41-660-7612	041-663-0356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2	041-663-0347	
	항만건설과	041-660-7696	041-669-3745	
국립해양 조사원	운영지원과	051-400-4112	051-400-4191	
	해양예보과	051-400-4381	051-400-4399	
	해양관측과	051-400-4381	051-400-4192	

(2) 동해·서해·동해어업지원단

소 속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동해어업 관리단	운영지원과	051-410-1005	051-410-1046
	안전정보과	051-410-1070~1	051-410-1074
서해어업 관리단	운영지원과	061-240-7912	061-240-7918
	안전정보과	061-240-7951	061-240-7958
남해어업 관리단	운영지원과	064-780-2407	064-780-2420
	안전정보과	064-780-2448	064-780-2458

(3) 국립수산과학원(수산사무소)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국립수산과학원	051)720-2032 051)720-2300(당직실)	051-720-2029	
동해수산연구소	033)660-8508	660-8511	
서해수산연구소	032)745-0534	745-0539	
남해수산연구소	061)690-8919	686-3860	
남동해수산연구소	055)640-4774	641-2036	
중앙내수면연구소	041)750-4303	589-5151	
제주수산연구소	064-750-4303	720-2439	
수산종자육종연구소	061-530-3903	270-0913	

다. 유관단체 비상연락망

(1) 부산항만공사

부 서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재난안전실	051-999-8493, 8491, 8496	051-999-3257
(야간)당직실	051-999-3114	051-999-3295

(2) 인천항만공사

부 서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재난안전실	032-890-0721	032-726-0328
당직실	032-890-0004	032-726-0311

(3) 울산항만공사

부 서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안전환경실	052-228-5435	052-228-5419
상 황 실	052-228-4100	052-260-5305

(4) 여수광양항만공사

부 서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안전보안실	061-797-4485	061-797-4494
상 황 실	061-797-4497	061-797-4494

(5)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부 서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운항관리실	044-330-2373~5	044-330-2379

(6) 선박안전기술공단

기 관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부 운항관리실	044-330-2370~2376	044-330-2379
부산 운항관리센터	051-469-8425	051-469-8427
인천 운항관리센터	032-889-3945~3952	032-889-4061
목포 운항관리센터	061-247-9457~9463	061-247-9594
제주 운항관리센터	064-759-9781~9784	064-759-9786
여수 운항관리센터	061-662-9713, 9715, 9717, 9718, 9720	061-662-9719
전북 운항관리센터	063-471-7486~7489	063-471-7490
완도 운항관리센터	061-555-4023~4028	061-555-4029
경북 운항관리센터	054-256-9784~9787	054-256-9788
통영 운항관리센터	055-649-8430~8435	055-649-8438
강원 운항관리센터	033-534-8437~38	033-534-8440
보령 운항관리센터	041-931-9083~9086	041-931-9087

(7) 해양환경공단

기 관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부 당직실	02-3498-8500	02-3462-7707
부산 방제팀	051-466-3924	051-466-3915
인천 방제팀	032-884-7706	032-884-7703
여수 방제팀	061-665-7705	061-665-7702
울산 방제팀	052-261-3438	052-260-8909
대산 방제팀	041-664-9103	041-664-9104
마산 방제팀	055-223-5660	055-244-4229
동해 방제팀	033-532-4056	033-532-3559
군산 방제팀	063-468-2101	063-468-2102
포항 방제팀	054-231-6656	054-231-6657
평택 방제팀	031-683-7973	031-683-7901
제주 방제팀	064-753-4376	064-753-4375

(8) 수협중앙회

소 속	직 급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 협 중앙회	기획관리부	02-2240-2121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23	02-2240-3027
	회원경영지원부	02-2240-2251	
	안전관리실	02-2240-2341	02-2240-3034
	공제보험부	02-2240-2941	
	경제기획부	02-2240-2372	

(9) 행정안전부

소 속	부 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태풍호우)	044-205-5245	044-205-8966
	재난정보통신과	044-205-5281~3	044-205-8961
	복구지원과	044-205-5318~9	044-205-8912
	재난구호과	044-205-5386~7	044-205-8913
	재난자원관리과	044-205-5272, 5275	044-205-8908

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비상연락망

(1) 본부 및 관련기관

기 관	부 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8000~2	
	자연재난대응과(태풍호우)	044-205-5245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044-200-5893	044-200-5886
	해사안전관리과(총괄)	044-200-5857~8	044-200-5869
	항만운영과(하역시설)	044-200-5777	044-200-5789
	항만기술안전과(항만시설)	044-200-5955~6	044-200-5929
	해양환경정책과(환경)	044-200-5287	044-200-5299
	어촌어항과(어항시설)	044-200-5656	044-200-5669
	어촌양식정책과(수산시설)	044-200-5617	044-200-5649

(2) 부산청

기 관	부 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산청	운영지원과	051-609-6212	051-609-6219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543	051-609-6529
	항만물류과	051-609-6411	051-609-6419
	해양수산환경과	051-609-6511	051-609-6519
	항로표지과	051-609-6808	051-609-6809
	계획조사과	051-609-6713	051-609-6719
	항만개발과	051-609-6746	051-609-6759
	항로정비과	051-609-6784	051-609-6779

(3) 부산항만공사

부 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재난안전부	051-999-8496	051-999-3179
고객서비스센터	051-999-3131	051-988-3388
(야간)당직실	051-999-3114	051-988-2388

(4) 선박안전기술공단

기 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운항관리센터	044-330-2372	044-330-2379
부산운항관리센터	051-469-8425	051-469-8427
제주운항관리센터	064-757-2892	064-753-9430

(5) 해양환경공단

기 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방제대응팀	02-3498-8606	02-3498-8687
부산 방제팀	051-466-3924	051-466-3915
제주 방제팀	064-753-4376	064-753-4375

(6) 관련 지자체

기 관	부 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산시	시청 자연재난과	051-888-2967	051-888-2959
	남구청 안전총괄과	051-607-4645	051-607-4649
	동구청 안전예방과	051-440-4641	051-440-4649
	서구청 구민안전과	051-240-4642	051-240-4749
	중구청 안전도시과	051-600-4641	051-600-4639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051-419-4642	051-419-4649
	사하구청 안전총괄과	051-220-4624	051-220-4649
	강서구청 안전도시과	051-970-4644	051-970-4649
제주	제주도청 재난대응과	064-710-3634	064-710-3619

(7) 해양경찰청

기 관	부 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상황실	051-663-2542	051-663-2942
	경비과	051-663-2541	051-663-2646
	해양오염방제과	051-663-2591	051-663-2997
부산해양 경찰서	상황실	051-664-2542	051-664-2900
	경비구조과	051-664-2541	051-664-2900
	해양오염방제과	051-664-2591	051-664-2991

(8) 부산소방본부 및 항만소방서

부 서	전화번호	비고
부산소방본부	051-760-3006	
부산시 항만소방서	051-760-4931	
부두119안전센터	051-760-6931~2	
영선119안전센터	051-760-6921~2	
청학119안전센터	051-760-6940	
동삼119안전센터	051-760-6911~2	
소방1정대	051-760-6952	
소방2정대	051-760-6961	
항만구조대	051-760-6902	

(9) 해군작전사령부

부 서	전화번호	비고
상황실	051-679-0301~0304	051-679-0328



별 첨

V. 별첨

1

해양분야 재난대비 대응요령

1. 관심단계(상시 대비단계)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가. 선박

(1) 항해선박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태풍 발생여부 확인(선박직원)

통신기기 및 구명설비 상태를 점검(선박직원)

선체 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철저(선박직원)

(2) 정박선박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 유지(선박직원)

기관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 점검(선박직원)

선박과의 충돌로 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업체, 선박직원)

선박관련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유지(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상륙선원 비상연락망 유지 및 선내 순찰실시(업체, 선박직원)

나. 항만시설

(1) 하역시설

○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각종 하역 장비별 피해 예방대책 수립(업체, 항만공사)

○ 크레인 전도 방지용 tie-down device 등 안전장치 점검(항만공사, 업

체)

- 기상특보 시 하역시설별 피해예방 대책 시행(업체, 항만공사)

(2) 항만 운영시설

-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은 태풍내습기 이전에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보수보강 시행(업체, 항만공사)
- 야적장은 배수 및 포장상태가 불량한 곳은 즉시 보수보강(업체, 항만공사)
- 항만운영 시설별 피해예방 대책 수립(항만공사)
- 재해발생 예상지역 순찰 강화, 사고대비(업체, 항만공사)

(3) 부두·방파제 시설

-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 간단한 복구로 피해확대를 막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근공사 시공업체를 통해 우선 보강조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 재해발생 예상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대비(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 항만 내 방파제 등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표지판 설치 및 구명설비 비치 등 안전관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4) 항만공사현장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가급적 태풍기 이전에 취약부분의 주요 공정이 우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공(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 현장인근에 사전 확보(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재해발생에 대비한 중장비 동원 등 응급복구 방안강구(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부실 현장지역 발견 시 시·군(지방해양수산청)에 연락하여 복구조치(업체)
-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 붕괴 등 위험요소를 점검, 필요한 방재 자재의 확보(시·군, 지방해양수산청)

2. 주의·경계단계(사전 대비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종합정보 중 예비 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 가동이 필요한 단계

가. 선 박

(1) 항해선박

-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태풍진로 파악(선박직원)
-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해(선박직원)
- 통신기기 및 구명설비 상태 점검·정비(선박직원)
- 선체·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선박직원)
- 항내 피항을 대비하여 인근 항만상황을 파악(선박직원)
- 항해선박에 항만 입출항 항행정보 제공(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항만별 선박 대피능력 확인(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 긴급 상황 시 단계별로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대피능력 확인(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2) 정박선박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 유지(선박직원)
- 기관은 가동하여 유사시 즉시 대응준비(선박직원)
- 선박과의 충돌로 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대책강구(업체, 선박직원)
- 선박대피협의회 개최 및 항내 정박선 피항 여부 결정(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산청, 항만공사, 업체)

- 수리 중인 선박 신속히 응급조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 접안선박은 항만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거나 항 밖으로 대피(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선박직원)
- 항내 계류된 소형선박은 계류색 보강 등 결박 강화
- 선원 비상근무조치 및 선내순찰 강화(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선박직원)
- 긴급 상황 시 단계별로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대피능력 확인(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나. 항만시설

(1) 하역시설(지방해양수산청, 업체, 민간인)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 시행(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 크레인 전도방지용 tie-down device 등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강풍에 대비(항만공사, 업체)
- 재해발생 예상 하역시설·장비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항만공사, 업체)
- 긴급 상황 시 단계별로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대피능력 확인(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 민간방재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적시대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2) 항만 운영시설(지방해양수산청, 업체, 민간인)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순찰강화(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업체)
- 재해발생 예상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비(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3) 부두·방파제 시설(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상황을 판단(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 재해발생 예상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비(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 간단한 복구로 피해확대를 막을 수 있는 시설물은 인근 공사업체로 하여금 우선보강 조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 긴급상황 우려시 신속히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지방해양수산청, 업체)

(4) 항만공사장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민간방재단 공사현장 순찰 강화 유사시 즉시보고(업체)
- 시공 중인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로 태풍 영향권에 들기 전에 임시 보강조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태풍주의보가 발표되면 공사장비 및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지방해양수산청, 업체)

3. 심각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

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 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가. 선 박

(1) 항해선박

-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태풍진로 파악(선박직원)
-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항해(선박직원)
- 항내 피항을 대비하여 인근 항만상황을 파악(선박직원)
- 조난 발생 시 즉시보고 및 구조요청(지방해양수산청, 선박직원)
- 피항선박에 항만 입출항 항행정보 제공(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항만별 선박 대피능력을 확인(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2) 정박선박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 유지(선박직원)
- 기관을 가동하여 안전한 곳에 투묘(선박직원)
- 선원 비상근무조치 및 선내순찰 강화(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선박직원)
- 선박과의 충돌로 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대책강구(업체, 선박직원)
- 선박대피협의회 개최결과, 정박선박 안전한 곳으로 대피조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 접안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항 밖으로 대피(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선박직원)
- 항내 계류된 소형선박은 계류색 보강 등 결박 강화
- 수리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재해방지대책 강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 긴급 상황 시 즉시보고 및 응급조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선박직원)
- 피해선박을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재해대책본부

에 보고(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선박직원)

나. 항만시설

(1) 하역시설(지방해양수산청, 업체, 민간인)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대책 시행(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 크레인 전도방지용 tie-down device 등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강풍에 대비(항만공사, 업체)
-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 재해발생 예상시설·장비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민간방재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적시대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 피해시설을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재해대책본부에 보고(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2) 항만 운영시설(지방청, 업체, 민간인)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업체)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 고박 및 보강(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 재해발생시 즉시 계통보고 및 응급복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3) 부두·방파제 시설(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상황을 판단(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업체)
- 재해발생 예상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여부 확인(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산청, 항만공사, 업체)

- 재해발생시 즉시 계통보고 및 응급복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업체)

(4) 항만공사장(시·군, 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공사 중인 현장은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를 활용 신속히 보강조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공사용장비 및 인원은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태 풍

1. 관심단계(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가. 어선(시군, 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

(1) 조업어선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어업정보통신국과 통신유지(어업인)
 조업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어업인)
 어선간 통신유지 및 안전조업수칙 준수(어업인)
 해난사고 발생시 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어업인)
 조업 어장별로 기상방송 실시(어업정보통신국)
 출어선에 대한 조업위치 확인(어업정보통신국)
 항해 및 조업시 상시 구명조끼 착용(어업인)

(2) 정박어선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소형어선은 육상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어업인)
 육상 인양장비와 인원동원 계획 수립(어업인)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어업인)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시군, 어업인)

나. 수산시설

(1) 수산 증양식시설(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취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의 이상유무 확인(어업인)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어업인)

수산 증양시설 태풍보호대책 강구(시군)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어업인)

(2) 수산생물(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수온 및 비중 등 어장환경을 수시로 측정 확인(어업인)
출하 가능한 양식어류 등은 미리 판매(어업인)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 설치(어업인)
양식어류 질병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어병검사 준비(시군)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어업인)

(3) 어망 어구(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철거 가능한 시설물은 인양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어업인)
망줄 절단이 곤란한 어망 어구는 망줄 보강(어업인)
운반용 차량 및 인원을 동원계획 수립(어업인)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어업인)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군, 어업인)

(4) 어항공사장(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가급적 태풍기 이전에 취약부분의 주요
공정이 우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 민간인)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 현장인근에 사전 확보(업체, 민간인)
재해발생에 대비한 중장비 동원 등 응급복구 방안강구(업체, 민간인)
부실 현장지역 발견시 시군에 연락하여 복구조치(업체, 민간인)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업체, 민간인)
붕괴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필요한 방재 자재의 확보여부 점검(시군)

다. 해안지역(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계획 수립(시도, 시군)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위험시설물 파악(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각종 공사장 안전조치 및 해안도로 통제계획 수립(시도, 시군)

입간판, 가옥지붕 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박(업체, 민간인)

2. 주의 경계단계(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가. 어 선(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

(1) 조업어선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어업정보통신국과 통신유지(어업인)

기상특보시 안전회항이 가능한 해역에서 조업(어업인)

조업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어업인)

어선간 통신유지 및 안전조업수칙 준수(어업인)

어업정보통신국의 대피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어업인)

해난사고 발생시 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어업인)

조업 어장별로 기상방송 실시(어업정보통신국)

출어선에 대한 조업위치 확인(어업정보통신국)

조업어선이 태풍영향권에 들지 않도록 대피지시(어업정보통신국)

- 태풍중심이 북26도 도달시 : 북31도 이남 출어선 대피

- 태풍중심이 북28도 도달시 : 북33도 이남 출어선 대피

- 태풍특보 발효시 : 특보 발효해역 전 출어선 대피

대피중인 어선의 대피상황 파악(어업정보통신국)

미대피 어선은 즉시 대피하도록 촉구(어업정보통신국)
항해 및 조업시 상시 구명조끼 착용(어업인)

(2) 정박어선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소형어선은 인양장비 및 인원을 최대한 동원 즉시 인양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군, 어업인)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시군, 어업인)
항내 순찰을 강화하여 어선의 침몰, 유실 등을 방지(시군, 어업인)
어선의 피해예방 활동을 독려 및 지원(시군)

나. 수산시설

(1) 수산 증양시설(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시설물 고박 및 지지대로 보강(어업인)
취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의 이상유무 확인(어업인)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 해상작업대가이식 종묘시설 어장관리선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어업인)
달부자가두리 시설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강조치(어업인)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조치(어업인)
어촌계와 협조하여 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처(어업인)

(2) 수산생물(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춤(어업인)
수온 및 비중 등 어장환경을 수시로 측정 확인(어업인)
출하 가능한 양식어류 등은 미리 판매(어업인)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 설치(어업인)
양식어류 질병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어병검사 준비(시군)

채취한 양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지방청)

(3) 어망어구(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철거 가능한 시설물은 인양하여 차량 및 인원을 동원 안전한 곳으로 이동(어업인)

철거가 곤란한 어망어구는 망줄을 절단하여 해저에 침하(어업인)

망줄 절단이 곤란한 어망어구는 망줄 보강(어업인)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군, 어업인)

어업인과 협조하여 어망어구 재해예방 활동(시군)

(4) 어항공사장(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민간인)

민간방재단 공사현장 순찰 강화 유사시 즉시보고(시도, 업체)

시공중인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로 태풍 영향권에 들기 전에 임시 보강조치(업체, 민간인)

태풍주의보가 발표되면 공사장비 및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업체, 민간인)

다. 해안지역(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주민대피 준비(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위험시설 임시철거(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준비(업체, 민간인)

각종 공사장 안전조치 및 해안도로 운행제한(시도, 시군)

해수욕장 폐쇄 및 가 시설물 철거(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3. 심각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가. 어 선(시군, 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

(1) 조업어선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어업정보통신국과 통신유지(어업인)
어선간 통신유지 및 가시거리 내 황천항해(어업인)
전 선원 구명동의 착용 및 선장 직접 조타(어업인)
태풍위치, 진로, 규모, 속도 등을 어선에 통보(어업정보통신국)
태풍영향권에 들었을 경우 가항방향으로 황천항해 하도록 유도(어업정보통신국)
해난사고 발생시 해경 및 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어업인)
대피중인 어선의 대피상황 및 이상유무 확인(어업정보통신국)
미대피 어선은 대피하도록 계속촉구(어업정보통신국)
피해어선 발생시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지자체 재해대책본부에 보고(어업인)
항해 및 조업시 상시 구명조끼 착용(어업인)

(2) 정박어선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민간방재단 비상체제 유지 및 순찰강화(어업인)
피해가 예상되는 인양된 소형어선은 완전결박(시군, 어업인)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시군, 어업인)
정박어선의 피해예방 활동을 독려 및 지원(시군)
피해어선을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지자체 재해대책본부에 보고(어업인)

나. 수산시설

(1) 수산 증양시설(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민간방재단 재해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어업인)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시설물 고박 및 지지대 보강(어업인)

취 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 증양시설 이상유무 확인(어업인)

민간방재단과 협조하여 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처(시군, 어업인)

피해시설을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지자체 재해대책본부에 보고(어업인)

(2) 수산생물(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어업인)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춤(어업인)

수온 및 비중 등 어장환경을 수시로 측정 확인(어업인)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 보강설치(어업인)

양식어류 질병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어병검사 실시(시군)

채취한 양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시군)

피해시설을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지자체 재해대책본부에 보고(어업인)

(3) 어망어구(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어업인)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차량 및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육지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시군, 어업인)

어업인과 협조하여 어망어구 재해예방에 힘씀(시군)

피해시설을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지자체 재

해대책본부에 보고(어업인)

(4) 어항공사장(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업체, 민간인)

공사중인 현장은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를 활용 신속히 보강조치
(업체, 민간인)

공사용 장비 및 인원은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업체, 민간인)

재해발생시 즉시 계통보고 및 응급복구(시군, 업체, 민간인)

다. 해안지역(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민간인)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및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금(민간인)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주민대피(시
도, 시군, 업체, 민간인)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위험시설 임시철거(시도, 시
군, 업체, 민간인)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정지 및 신속대피(업체, 민간인)

가로등, 고압전선 접근금지 및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업체, 민간인)

각종 공사장 안전조치 및 해안도로 차량통제(시도, 시군)

입간판, 가옥지붕 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박(업체,
민간인)

해수욕장 폐쇄 및 가 시설물 철거(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재해 발생시 수방자재 활용 응급복구(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이재민 발생시 구호물자 활용 인근 학교, 교회 등에 임시수용(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재해대책본부 보고(업체, 민간인)

* 어플리케이션 ‘해로드’ 및 ‘안전해’를 통한 기상상황 모니터링

. 호 우

1. 관심단계(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가. 어 선(시군, 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

(1) 조업어선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어업정보통신국과 통신유지(어업인)
조업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어업인)
어선간 통신유지 및 안전조업수칙 준수(어업인)
해난사고 발생시 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어업인)
조업 어장별로 기상방송 실시(어업정보통신국)
출어선에 대한 조업위치 확인(어업정보통신국)
항해 및 조업시 상시 구명조끼 착용(어업인)

(2) 정박어선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소형어선은 육상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어업인)
육상 인양장비와 인원동원 계획 수립(어업인)
기관실 등 창문 파손여부 확인 및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 정비(어업인)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어업인)
항내 정박선박은 침몰,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평시에 정비 철저
(시군, 어업인)

나. 수산시설

(1) 수산증양식시설(시군, 지방청,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 유지(어업인)

육상양식장에서는 비상발전기, 순환펌프, 산소공급시설 등을 사전에 이상여부 점검(어업인)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어업인)

수산증양식시설 호우보호대책 강구(시군)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어업인)

(2) 수산생물(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수온 및 비중 등 어장환경을 수시로 측정 확인(어업인)

출하 가능한 양식어류 등은 미리 판매(어업인)

집중호우시 탁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수원지 부근정비(어업인)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 설치(어업인)

양식어류 질병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어병검사 준비(시군)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어업인)

(3) 어망어구(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철거 가능한 시설물은 인양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어업인)

어망어구 운반용 차량 및 인원 동원계획 수립(어업인)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어업인)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호우피해가 없도록 육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군, 어업인)

(4) 어항공사장(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가급적 호우시기 전에 취약부분의 주요
 공정이 우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 민간인)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는 현장인근에 사전 확보(업체, 민간인)
 호우피해 대비한 중장비 동원 등 응급복구 방안강구(업체, 민간인)
 부실 현장지역 발견시 시군에 연락하여 복구조치(업체, 민간인)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업체, 민간인)
 붕괴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필요한 방재자재의 확보여부 점검(시군)

다. 해안지역(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주민대피
 계획수립(시도, 시군)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위험시설 임시철거(시도, 시
 군, 업체, 민간인)
 가로등, 고압전선 접근금지 및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업체, 민간인)
 각종 공사장 안전조치 및 해안도로 차량통제계획 수립(시도, 시군)
 입간판, 가옥지붕 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박(업체,
 민간인)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비축(시도, 시군)

2. 주의 경계단계(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
 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가. 어 선(시군, 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

(1) 조업어선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어업정보통신국과 통신유지(어업인)
 조업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어업인)
 어선간 통신유지 및 안전조업수칙 준수(어업인)

해난사고 발생시 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어업인)
조업 어장별로 기상방송 실시(어업정보통신국)
출어선에 대한 조업위치 확인(어업정보통신국)
항해 및 조업시 상시 구명조끼 착용(어업인)

(2) 정박어선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호우피해 우려 소형어선은 육지 인양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군, 어업인)
항내 정박선박은 침몰,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순찰강화(시군, 어업인)
어선의 피해예방 활동 독려 및 지원(시군)

나. 수산시설

(1) 수산 증양식시설(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호우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고박 및 지지대로 보강(어업인)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 해상작업대가이식 종묘시설 어장관리선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어업인)
하천하구 주변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조치(어업인)
어촌계와 협조하여 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처(어업인)

(2) 수산생물(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춤(어업인)
수온 및 비중 등 어장환경을 수시로 측정 확인(어업인)
출하 가능한 양식어류 등은 미리 판매(어업인)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 설치(어업인)
하천하구 주변 양식생물, 가이식종묘 등은 담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어업인)
하천주변에 시설된 육상양식장은 배수구로 담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배수시
설 점검(어업인)

양식어류 질병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어병검사 준비(시군)
채취한 양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시군)

(3) 어망어구(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철거 가능한 시설물(정치망, 정치성 구획어업 포함)은 인양하여 차량
및 인원을 동원 안전한 곳으로 이동(어업인)
철거가 곤란한 어망어구는 망줄을 절단하여 해저에 침하(어업인)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호우피해가 없도록 육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군, 어업인)
어업인과 협조하여 어망어구 재해예방 활동(시군)

(4) 어항 공사장(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민간방재단 공사현장 순찰 강화 유사시 즉시보고(시군, 업체)
시공중인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로
여름철 우기전에 임시 보강조치(업체, 민간인)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비 및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
(업체, 민간인)

다. 해안지역(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주민준비(시
군, 업체, 민간인)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위험시설 임시철거(시군, 업
체, 민간인)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준비(업체, 민간인)
각종 공사장 안전조치 및 해안도로 운행제한(시군)
입간판, 가옥지붕 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박(업체, 민간인)
해수욕장 폐쇄 및 가 시설물 철거(시군, 업체, 민간인)

3. 심각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가. 어 선(시군, 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

(1) 조업어선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어업정보통신국과 통신유지(어업인)
어선간 통신유지 및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어업인)
조업시 견시원 배치 및 전 선원 구명동의 착용(어업인)
해난사고 발생시 해경 및 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어업인)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및 이상유무 확인(어업정보통신국)
침몰어선 발생시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재해대책본부에 보고(어업인)
항해 및 조업시 상시 구명조끼 착용(어업인)

(2) 정박어선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어업인)
호우피해가 예상되는 소형어선은 인양하여 안전한 곳에서 완전결박(시군, 어업인)
항내 정박선박은 침몰,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 결박조치(시군, 어업인)
정박어선의 호우피해 예방활동 독려 및 지원(시군)
피해어선을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재해대책본부에 보고(어업인)

나. 수산시설

(1) 수산증양식시설(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민간방재단 재해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어업인)
호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 고박 및 지지대 보강(어업인)
취 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 증양식시설 이상유무
확인(어업인)
민간방재단과 협조하여 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처(시군, 어업인)
피해시설을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재해대책본부
에 보고(어업인)

(2) 수산생물(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어업인)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춤(어업인)
수온 및 비중 등 어장환경을 수시로 측정 확인(어업인)
하천하구 주변 육상양식장은 배수구로 담수가 유입하지 않도록
순찰강화(어업인)
토사로 인한 탁수 유입방지를 위하여 수원지 부근 순찰강화(어업인)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 보강설치(어업인)
양식어류 질병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어병검사 실시(시군)
채취한 양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시군)
피해어류 확인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지자체 재해대책본부에 보
고(어업인)

(3) 어망어구(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어업인)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차량 및 인원을 동원하여 육지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시군, 어업인)
어업인과 협조하여 어망어구 호우피해 예방활동(시군)

다. 어항공사장(시 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공사중인 현장은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를 활용 신속히 보강조치(업체, 민간인)

공사용 장비 및 인원은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업체, 민간인)

재해발생시 즉시 계통보고 및 응급복구(업체, 민간인)

라. 해안지역(시 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민간인)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주민대피(시 군, 업체, 민간인)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위험시설 임시철거(시 도, 업체 등)

각종 공사장 안전조치 및 해안도로 운행자제(시 군)

재해 발생시 수방자재 활용 응급복구(시 군, 업체, 민간인)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재해대책본부 보고(업체, 민간인)

. 대 설

1. 관심단계(상시대비단계)

가. 어 선

(1) 조업어선(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어업정보통신국과 통신유지(어업인)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어업인)

어선간 통신유지 및 안전조업수칙 준수(어업인)

해난사고 발생시 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어업인)

조업 어장별로 기상방송 실시(어업정보통신국)

출어선에 대한 조업위치 확인(어업정보통신국)

항해 및 조업시 상시 구명조끼 착용(어업인)

(2) 정박어선(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소형어선은 육상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어업인)

육상 인양장비와 인원동원 계획 수립(어업인)

기관실 창문 등을 점점 파손된 부분은 보수하여 동파에 유의(어업인)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어업인)

나. 수산시설

(1) 수산증양식시설(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취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의 이상유무 확인(어업인)

시설물이 폭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지지대 등으로 보강(어업인)

폭설대비 제설장비 확보(어업인)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 해상작업대, 가이식 종묘시설, 어장관리선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어업인)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어업인)

수산증양식시설 폭설보호대책 강구(시군)

(2) 수산생물(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수온 및 비중 등 어장환경을 수시로 측정 확인(어업인)

폭설에 대비하여 수방자재, 보온자재 등 준비(어업인)

출하 가능한 양식어류 등은 미리 출하판매(어업인)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어업인)

양식어류 질병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어병검사 준비(시군)

(3) 어망 어구(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운반용 차량 및 인원 동원계획 수립(어업인)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어업인)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군, 어업인)

다. 어항공사장(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가급적 겨울철 이전에 취약부분의 주요 공정이 우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 민간인)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 현장인근에 사전 확보(업체, 민간인)

제설용 장비 동원 등 응급복구 방안강구(업체, 민간인)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업체, 민간인)

붕괴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필요한 방재 자재의 확보여부 점검(시군)

라. 해안지역(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민간인)

저지대 및 상습피해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경계강화(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위험시설 임시철거(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가로등, 고압전선 접근금지 및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업체, 민간인)

각종 공사장 안전조치 및 해안도로 통제계획 수립(시도)

입간판, 가옥지붕 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박(업체, 민간인)

수방자재(염화칼슘 등) 및 구호물자 비축(시도, 시군)

제설용 장비 및 인원 확보계획 수립(시도, 시군)

2. 주의 경계단계(사전대비단계) *대설정보 및 예비특보 발표시

가. 어 선

(1) 조업어선(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어업정보통신국과 통신유지(어업인)
조업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어업인)
어선간 통신유지 및 안전조업수칙 준수(어업인)
해난사고 발생시 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어업인)
조업 어장별로 기상방송 실시(어업정보통신국)
출어선에 대한 조업위치 확인(어업정보통신국)
항해 및 조업시 상시 구명조끼 착용(어업인)

(2) 정박어선(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폭설피해가 예상되면 소형어선은 즉시 인양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군, 어업인)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시군, 어업인)
피해예방 활동을 독려 및 지원(시군)

나. 수산시설

(1) 수산증양식시설(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폭설에 무너지지 않도록 시설물 고박 및 지지대로 보강(어업인)
취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의 이상유무 확인(어업인)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 해상작업대가이식 종묘시설 어장관리선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어업인)
닷 부자가두리 시설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강조치(어업인)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조치(어업인)
어촌계와 협조하여 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처(시군, 어업인)

(2) 수산생물(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춤(어업인)
수온 및 비중 등 어장환경을 수시로 측정 확인(어업인)
출하 가능한 양식어류 등은 미리 판매(어업인)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 설치(어업인)
채취한 양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시군)

(3) 어망어구(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철거 가능한 시설물은 인양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어업인)
망줄 절단이 곤란한 어망어구는 망줄 보강(어업인)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군, 어업인)
운반용 차량 및 인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시군)
어업인과 협조하여 어망어구 재해예방에 힘씀(시군)

다. 어항공사장(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순찰강화(시군, 업체, 민간인)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 현장인근에 사전 확보(업체, 민간인)
폭설로 붕괴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필요 시 보강조치(업체, 민간인)

라. 해안지역(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민간인)
저지대 및 상습피해지역 등 위험지구 경계강화(지자체, 업체 등)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위험시설 임시철거(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가로등, 고압전선 접근금지 및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업체, 민간인)

각종 공사장 안전조치 및 해안도로 통제계획 수립(시도, 지방청)

입간판, 가옥지붕 결박 및 낙하위험물의 제거 또는 결박(업체, 민간인)

수방자재(염화칼슘, 모래 등) 및 구호물자 비축(시도, 시군)

제설용 장비 및 인원 확보계획 수립(시도, 시군)

3. 심각단계(대설주의보, 경보 발표시)

가. 어 선

(1) 조업어선(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어업정보통신국과 통신유지(어업인)

어선간 통신유지 및 안전조업수칙 준수(어업인)

어선간 거리유지 및 견시원 배치(어업인)

선내 제설작업 및 안전사고 방지(어업인)

해난사고 발생시 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어업인)

관내 어선에 대한 조업위치 확인(어업정보통신국)

피해어선 발생시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지자체 재해대책본부에 보고(어업인)

항해 및 조업시 상시 구명조끼 착용(어업인)

(2) 정박어선(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민간방재단 선내 제설작업 및 순찰강화(어업인)

항내 정박선박은 침몰, 유실을 방지조치(시군, 어업인)

제설작업 활동 독려 및 지원(시군)

피해선박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에 의거 지자체 재해대책본부에 보고(어업인)

나. 수산시설

(1) 수산증양시설(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민간방재단 제설작업 및 순찰강화(시군, 어업인)
폭설에 무너지지 않도록 시설물 고박 및 지지대 보강(어업인)
취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의 이상유무 확인(어업인)
피해시설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에 의거 지자체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어업인)

(2) 수산생물(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민간방재단 제설작업 및 순찰강화(시군, 어업인)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춤(어업인)
수온 및 비중 등 어장환경을 수시로 측정 확인(어업인)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 보강설치(어업인)
채취한 양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시군)
양식어류 질병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어병검사 실시(시군)
피해어류 확인 및 피해상황보고서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에 보고(어업인)

(3) 어망 어구(시군, 어업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통신망 유지(어업인)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어업인)
어업인과 협조하여 어망 어구 재해예방(시군)
피해어구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에 의거 지자체 재해대
책본부에 보고(어업인)

다. 어항공사장(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민간방재단 제설작업 및 순찰강화(시군, 업체, 민간인)
미리 준비해 놓은 피복석, TTP로 임시 보강 조치한 후 장비 및

인원을 안전지대로 대피(업체, 민간인)

재해발생시 중장비 동원 등 응급복구 및 계통보고(업체, 민간인)

라. 해안지역(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민간인)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민간인)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및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금(민간인)

저지대 및 상습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주민대피 (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위험시설 임시철거(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가로등, 고압전선 접근금지 및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업체, 민간인)

각종 공사장 안전조치 및 해안도로 차량통제(시도, 시군)

입간판, 가옥지붕 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박(업체, 민간인)

제설장비 및 인원 동원 제설작업 실시(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재해 발생시 수방자재 활용 응급복구(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이재민 발생시 구호물자 활용 인근 학교, 교회 등에 임시수용(시도, 시군, 업체, 민간인)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재해대책본부 보고(업체, 민간인)

재해발생 시 즉시 계통보고 및 응급복구(시군, 지방청, 업체)

* 어플리케이션 ‘해로드’ 및 ‘안전해’를 통한 기상상황 모니터링

태풍 일자별 조치목록(예시)

조치 목록	8월1일	8월2일	8월3일	8월4일	8월5일	비고
태풍정보 점검·분석						
대책회의 개최						
태풍진행상황의 보고 및 전파						
위기경보 발령사항 대처 및 전파	관심 지속	주의	경계	심각		
비상대책반의 운영						
유관기관에 비상근무 강화지시						
유관기관에 대처상황 점검						
비상대책반의 긴급대응조치						
본부 지시사항 이행실태 확인						
재해피해 예방 홍보강화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점검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점검						
유관기관 지원체계 가동						

비상근무자 편성표

○ 총괄반

구 분	1조	2조	3조	4조	5조
조장(사무관급)					
반원(주무관급)					

○ 실시반

구 분	선원해사반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반 (항만물류과)	시설복구반 (항만개발과, 계획조사과)	항로표지반 (항로표지과)	해양환경반 (해양수산환경과)	행정지원반 (운영지원과)
조 장 (5급)	1조					
	2조					
	3조					
	4조					
	5조					
반 원 (주무 관급)	1조					
	2조					
	3조					
	4조					
	5조					

- * 해당과 여건에 따라 조장(사무관급)은 6급으로 대체 가능함
- * 대책본부장의 비상근무 지시가 있을 때에는 비상근무 실시
- * 비상근무 시행시 반원은 1조부터 시작

비상대책반 연락망

구 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근무형태	비 고
부산청	051-609-6271	051-609-6270	24시간 교대근무	항만정비과 051-609-6784
제주단	064-720-2610	064-752-2163		재난담당 064-720-2647

* 부산항만공사 대표 : 051-999-3000(당직 051-999-3114)

* 연안여객터미널 운항관리실 : 051-400-3138(제주항로 19:00↔07:00 월,수,금)

각 실무반별 재난담당자(서무) 연락망(24시간 유선대기)

실무반	과명	담당자	연락처	휴대폰
총괄반	항만정비과	장성욱	051-609-6784	010-4008-2177
선원해사반	선원해사안전과	진예주	051-609-6314	010-2949-1055
항만물류반	항만물류과	박정현	051-609-6444	010-3634-8692
시설복구반	항만개발과	이호준	051-609-6746	010-3342-3964
	계획조사과	박귀주	051-609-6713	010-3858-4779
항로표지반	항로표지과	이채원	051-609-6804	010-4090-4880
해양환경반	해양수산환경반	신서연	051-609-6527	010-6741-0548
행정지원반	운영지원과	전진수	051-609-6265	010-9456-3175

연안여객선 운항현황(부산지방해양수산청)

00월 00일 00시 현재

구분	계		정상운항 항로 (비통제)		통제항로		비운항항로	
	항로	척	항로	척	항로	척	항로	척
부산청								

정확한 통계를 위해 선박안전관리공단 운항관리실(해당지부)에 항로 및 척수 확인 후 보고할 것

국제여객선 운항현황(부산지방해양수산청)

00월 00일 00시 현재

구분	계		정상운항 항로 (비통제)		통제항로		비운항항로	
	항로	척	항로	척	항로	척	항로	척
부산청								

재박(피항포함) 선박 선종별 현황(부산지방해양수산청)

00월 00일 00시 현재(단위 : 척)

구분	계	외항선	내항선	관공선	기타선	어선
부산청						

재박(피항포함) 선박 위치별 현황(부산지방해양수산청)

00월 00일 00시 현재(단위 : 척)

구분	계	부두접안	묘박지 정박	계선(류)장	비고
부산청					

선박 입·출항 통제현황(부산지방해양수산청)

00월 00일 00시 현재

소속기관별	통제사유	통제시각	통제대상선박	비고

항만·어항 공사장 대처현황(부산지방해양수산청)

00월 00일 00시 현재

소속 기관별	공사명	공사기간 및 공정	수방단		비고
			조직인원	활동내용	

하역장비 고박현황(부산지방해양수산청)

00월 00일 00시 현재

소속 기관별	장비종류	규격	수량	위치	운영사	조치현황

주요조치사항 보고(부산지방해양수산청)

00월 00일 00시 현재

일시	상황	조치내용

□ 피해상황보고서(부산지방해양수산청)

00월 00일 00시 현재

피해상황보고서	
송화자 소속 : 직급 : 성명 : 수화자 소속 : 직급 : 성명 : 보고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피해원인	
피해발생일시	
피해발생지역 또는 장소	
피해개요 및 피해액	
응급조치사항	
기타사항	

4

사전점검사항 체크리스트

○ 총괄상황반

NO	Checklist	확인(✓)	
		Y	N
1	기상관련 정보는 각 실무반에 전파하고 있는가?		
2	자연재난에 대한 비상근무실시 지시는 했는가?		
3	자연재난에 대한 진로방향 및 기상정보자료는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고 있는가?		

○ 선원해사안전반

NO	Checklist	확인(✓)	
		Y	N
1	조우가 예상되는 태풍의 정도 및 예상진로 파악을 위한 기상 정보를 입수하였는가?		
2	항로별 여객선 운항 동정파악은 되었는가?		
3	여객선별 피항지는 확인하였는가?		

○ 항만물류반

NO	Checklist	확인(✓)	
		Y	N
1	항내 재박선박 및 작업선박의 현황은 파악되었는가?		
2	하역작업상황은 체크하였으며, 작업중단여부는 확인하였는가?		
3	하역기의 고박상태는 확인하였는가?		

○ 해양수산환경반

NO	Checklist	확인(✓)	
		Y	N
1	해양오염방제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업체 등 비상연락망은 확인 하였는가?		
2	해양환경관리공단 위탁관리선박 피항조치 하였는가?		
3	해양훈련장비 및 시설 고정 등 안전조치 하였는가?		

○ 시설복구반

NO	Checklist	확인(✓)	
		Y	N
1	항만·어항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는 완료하였는가?		
2	항만·어항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는 완료하였는가?		
3	항만·어항시설물 및 공사현장의 응급복구 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4	항만·어항공사현장의 수방단 편성 및 활동은 적정한가?		
5	항만·어항공사현장의 비상연락망 구축은 완료하였나?		
6	항만·어항공사현장의 장비 및 인원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나?		
7	항만·어항시설물 및 공사현장별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는 준비하였나?		
8	항만·어항시설물 및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적 순찰은 실시하는가?		
9	항만·어항시설물 및 공사현장의 피해발생 여부 점검은 실시하는가?		

○ 항로표지반

NO	Checklist	확인(✓)	
		Y	N
1	유인등대 비상근무 및 통신망 이상여부 확인?		
2	유인등대 전원시스템 이원화(AC, DC) 구축여부 확인?		
3	유인등대 비상발전기 시운전 및 유류확보 여부확인?		
4	취약시설(기초지반, 축대, 담장, 영조물) 보강여부 확인?		
5	무인표지 정비원 비상근무 및 무인표지 감시원 비상연락망 확인?		
6	선박 비상근무 및 피항지역 선정 확인?		
7	선박 유류 및 계류줄 확보여부 확인?		
8	재난대비 예비품 정비점검 및 확보 여부 확인?		
9	본선에 기상팩스(JMH) 및 방송(TV,라디오)을 24시간 기상정보 청취 가능여부 확인?		
10	재난대비 예비품 정비점검 및 확보 여부 확인?		
11	선박 피항지역과 피항을 위한 조선법등 준비여부 확인?		
12	상기사항 이행여부 확인?		

○ 행정지원반

NO	Checklist	확인(✓)	
		Y	N
1	사고수습본부 상황실 설치준비는 되었는가?		
2	상황실 운영관련 PC 및 통신시설(전화, FAX) 운영방안은 준비되었는가?		
3	상황실 운영관련 각종 사무용품 지원은 가능한가?		
4	상황실 운영관련 급식지원 추진방안은 준비되었는가?		
5	유관기관 및 업단체의 비상연락망은 정비되었는가?		
6	직원 비상연락망은 정비되었는가?		
7	청사 취약시설(침수·누수지역) 사전 점검하였는가?		

□ 비상대책본부 근무 요령

○ (근무교대) 본부 및 소속기관 24시간 주·야 교대근무

<본부 비상대책본부 근무교대>

● 반장(과장) : (주간) 09:00~21:00, (야간) 21:00~익일 09:00, 근무지 유선대기

사무관급 : (주간) 09:00~21:00, (야간) 21:00~익일 09:00, 종합상황실 근무

주무관급 : (주간) 11:00~23:00, (야간) 23:00~익일 11:00, 종합상황실 근무

* 비상대책본부 3단계 가동시 반장은 국장급(비상대책본부 2단계 반장은 과장급)

** 야간 근무자는 매일 09:00 정기 상황점검회의 참석 후 근무교대

* 야간 근무자는 초과근무(일별 4시간) 또는 대체휴무 지정

** 식사 등 이석 시에도 교대로 실시하여 반별 최소 1인 이상 근무 유지하고, 반장은 1시간 이내 응소가능 지역에서 유선 대기

○ (인수인계) 근무 교대 30분 전부터 합동근무 실시

* 업무에 공백 및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반장 및 반원간 인수인계 철저

□ 정기·수시보고 및 상황점검회의 절차

○ (정기보고) 매일 09시, 17시 상황점검회의 실시(필요시)

－ (본부) 각 실무반에서는 매일 정기보고(08, 16시 기준) 자료를 08시 및 16시까지 비상대책본부(반) 총괄상황반에 보고*

* 비상대책본부 반별 임무·역할(붙임1 참조)에 따라 반별(항만운영반, 수산반, 해양환경반, 시설반) 정기보고자료 취합·보고

－ (소속기관) 매일 정기보고(08, 16시 기준) 30분 이전에 비상대책본부(반) 각 실무반에 동시 보고*

* 소속기관 반별 임무·역할(붙임2 참조)에 따라 반별(항만운영반, 수산반, 해양환경반, 시설반) 정기보고자료 작성 → 소속 기관 총괄반 보고 → 소속기관 총괄반은 본부 각 실무반에 온메일로 08, 16시까지 제출

○ (수시보고) 피해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 총괄상황반으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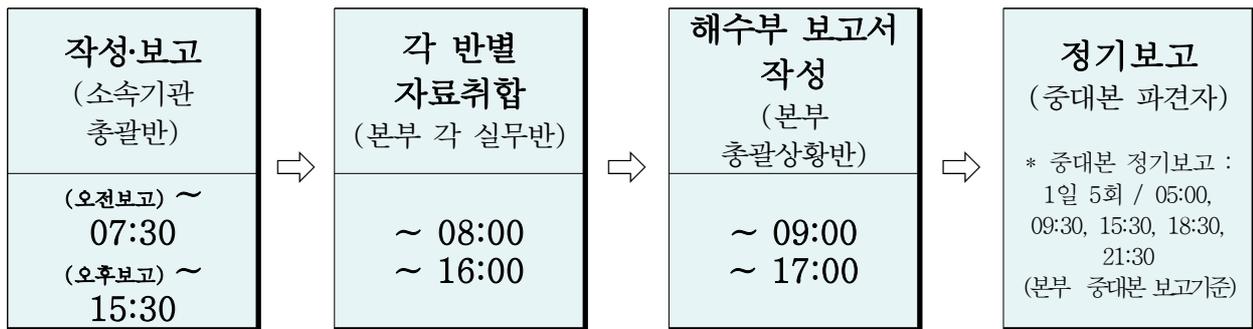
□ 본부 비상대책본부 보고서 작성 방법

- (항만운영반, 수산반, 해양환경반, 시설반) 각 소속기관에서 보고·취합된 자료 중 해당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총괄상황반에게 보고
- (총괄상황반) 각 실무반별 작성 보고서 최종 취합 및 보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무반에 검토 요청

* 보고·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이전 정기보고에서 변동된 사항은 적색으로 표시하고 필요시 세부내역 설명)

< 본부 각 실무반별 보고서 작성사항(붙임1 참조) >

- 총괄상황반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필요시, 각 실무반 업무 조율)
- (공통) : 해당분야 조치사항, 피해현황, 추진계획 등
 - 항만운영반 : 여객선 통제, 항만 통제, 하역설비 고박현황 등
 - 수산반 : 어선 조업/통제현황, 수산물 시설·생물 피해현황 등
 - 해양환경반 : 해양오염대비 현장점검 등 안전조치 등
 - 시설반 : 항만 및 어항 공사현장 현황, 건설장비 피항 현황 등



※ 근무 주의사항(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 해당)

행정안전부(중대본, 안전감찰관실), 대통령실 등 외부 기관에서 우리 부 비상대책본부(반) 운영 현황에 대한 전화문의, 방문점검 등 관련 사항은 본부 총괄반 및 해사안전관리과에 즉시 보고
비상대책본부 비상근무자 편성후 자체적으로 명단 변경시 본부 총괄반 및 해사안전관리과에 보고

□ 상황점검회의 참여 요령

- (점검회의) 매일 09시, 17시 **상황점검회의 실시**(필요시)
 - (본부) 비상대책본부 3단계 가동시 본부장(장관) 주재, 비상대책본부 2단계 가동시 안전책임관(기획조정실장) 주재
 - 비상대책본부 3단계 가동시 반장(국장) 참석 및 보고, 반원 배석
 - 비상대책본부 2단계 가동시 반장(과장) 참석 및 보고, 반원 배석
 -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본부에서 영상회의를 실시할 경우 기관장(비상대책본부 3단계 가동 후 장·차관님 주재시) 참석
- * 각 소속기관은 재난영상회의(나라 e음)를 위한 독립시스템(자체 자원 활용)을 재난대비 상황실에 상시 설치(배경 기관현수막 포함) 후 담당자 숙지교육 등 실시

< 영상회의 발표 절차 >

- (절차) 나라e음 영상회의 접속 → 진행중인 영상회의 목록 클릭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영상회의 검색 → 영상회의 접속 및 참여
- (유의사항)
 1. 자체 테스트 실시(영상회의 테스트는 회의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실시)
 2. 영상회의 접속시 마이크 버튼을 클릭하여 끈 상태로 대기
 3.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자 외에는 마이크를 끈 상태로 대기
 4. 발표 차례가 되면 마이크 활성화 버튼 클릭
 5. 발표 시 창 우측상단의 '발표시작하기' 버튼 클릭(화면이 발표자 위치)
 6. 발표 후 다시 한 번 '발표종료하기' 버튼 클릭
 7. 발표 전 주변 환경 점검

□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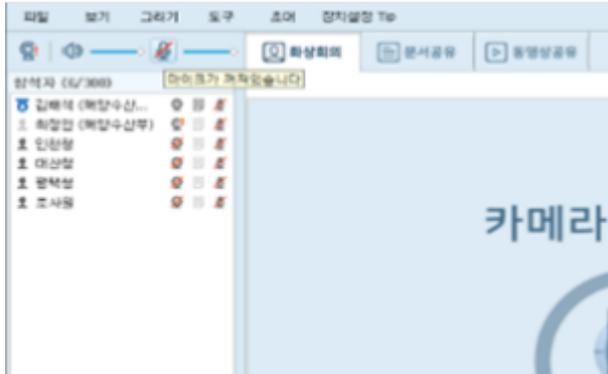
- 관할 증·양식장 안전관리, 조수 정보 적기 전파 등 우리부-지자체 간 **재난협력** 및 필요시 **파견근무**를 통한 **상황정보 공유** 등 실시
 - 소속기관-지자체(광역) 간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요시 즉시 파견근무(지방청→광역 지자체) 가능토록 관할 기관 간 사전매칭* 실시
- * 부산청-부산시, 인천청-인천시, 울산청-울산시, 평택청-경기도, 대산청-충남도, 군산청-

전북도, 목포청-전남도, 마산청-경남도, 포항청-경북도, 동해청-강원도, 부산청(제주
단)-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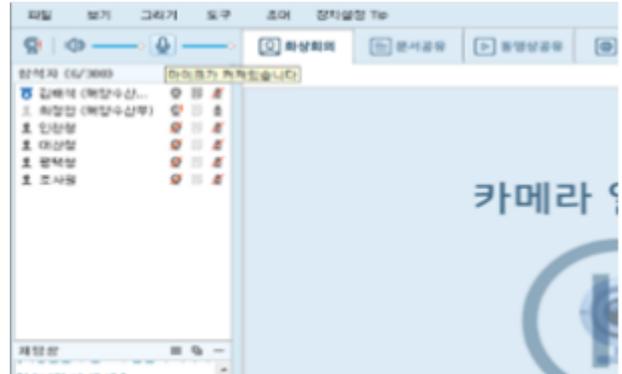
구 분	예방·대비	대응·복구
총괄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연락망) 기상청 정보 수시 확인 및 비상연락망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본부·소속·유관기관 비상근무자 명단 확보 * 태풍 북위 25도 이상 진입시 긴급대응반 탄력적 구성·운영 ○(상황 전파)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본부·소속·유관기관에 대응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점검회의 실시(필요시) * 매일 09시, 17시 비상대책반장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근무) 본부 및 소속기관 24시간 주·야 교대 근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위 28도, 동경 132도 이상일 경우 또는 행안부 중대본 가동시 비상대책본부 가동(본부장 : 장관) ○(상황전파) 본부·소속·유관기관에 대응상황 파악 및 장차관 지시사항 전파 ○(상황점검) 상황점검회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09시, 17시 본부장 주재 ○(피해확인) 피해상황 파악·취합 및 장차관 보고(필요시, 소관분야 사고원인 분석 및 복구 종합대책 수립)
항만 운영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운항) 항만 내 선박 및 하역설비 고박현황, 선박대피 현황 등 확인 ○(여객선 안전) 연안여객선 및 국제여객선 운항동향 및 안전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운항) 항만통제 강화 및 항만 내 선박, 화물, 시설, 장비 등 안전 강화 조치, 여객선 통제 현황 파악 ○(피해발생) 선박피해 응급조치
수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운항) 출어선 신속대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대피는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소관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따라 실시·점검 ○(수산시설) 위판장, 양식장 및 어구어망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강화 ○(수산생물)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두리 안전지대 대피 및 조기수확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운항) 출어선 신속대피 강화 ○(수산시설) 위판장, 양식장 및 어구어망 시설물 안전관리 지시 ○(수산생물)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두리 안전지대 대피 지시 ○(피해발생) 어선, 위판장, 양식장 등 피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복구
해양환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점검) 해양오염대비 현장점검 등 안전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사고시 오염 여부 확인 ○(방제자제)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제자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점검) 해양오염대비 현장 대비 태세 구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사고시 오염 여부 확인·대응 ○(피해발생) 해양오염 발생시 방제작업 투입 및 해양쓰레기 처리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보강)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취약부분 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공,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로 태풍 영향권에 들기전 임시 보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벽 및 물양장 기초사석 보호를 위해 블럭 등으로 보강조치, 오타방지막 훼손방지를 위해 철거 보관 ○(인력·장비) 태풍주의보 발표 시 공사장비 및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피해복구) 구조물의 안전 및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공사 시 공업체 등 가용 가능한 인원 및 장비 투입으로 최우선 보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비용처리는 선조치 후지원 ○(긴급안전점검) 공사중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피해복구 절차 : 공공사유시설 피해복구는 피해신고(NDMS 입력), 피해현장조사, 부처협의 및 복구계획 확정 절차로 실시

구 분	예방·대비	대응·복구
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동향 파악 및 기상정보 수집, 전파 대책본부 및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검토 * 관할 지자체 간 비상연락망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난 발생상황 종합 및 보고 비상대책본부(반) 운영 및 상황 파악·기록유지 본부 비상대책본부(반) 및 관계기관 업무 협조
운영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통신시설, 사무집기, 차량 등 사전준비 검토 재해발생시 대비 전 직원 비상연락망 최신화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복구 지원대책 강구 문서수발, 급식, 차량 등 행정지원
선원해사 안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항계박)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화물선사 및 대리점을 통한 기상현황 등 상황전파 여객동향 및 여객선 운항동향 파악 선원안전대책 및 여객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방지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항계박) 및 여객선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보고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피해상황 파악·보고 해운조합, 선사 등과의 협조체제로 피해발생 최소화 대책 강구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요청 등 응급조치
항로 표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인표지 정상 작동유무 점검정비 실시 노후시설 및 피해우려시설 점검정비 진행중인 항로표지 시설공사 공정파악 및 현장책임자 비상연락 유지 방재자재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인표지 및 공사현장 피해발생 현황 파악·보고 피해발생 항로표지에 대한 응급복구 계획 수립
항만 물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내 운항선박에 대한 상황전파(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운영시설, 하역장비 점검 항내 재박선박 현황파악 및 당직보강 등 경계강화 조치 자연재해 발생우려 항만의 재박선박 대피조치 태풍내습에 따른 선박대피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방청 항만물류과 또는 항만공사에서 주관 항만순찰 및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개항질서 단속 및 순찰주기 강화 위험물 하역부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관공선 비상연락망 구축 및 기상상황 파악 관공선의 기관·선체·통신시설 등 점검 및 정비 관공선 항해선박 및 정박선박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내 재박선박 및 피항선박 피해발생 현황 파악·보고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시설 피해발생 현황 파악·보고 선박침몰, 좌초시의 항로확보 대책 강구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요청 등 응급조치 위험물 하역부두 피해현황 파악·보고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요청 등 응급조치 선박 및 시설물 피해상황 파악
해양 환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오염 방재자재 현황 파악·보고 해양오염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오염 피해현황 파악·보고 해양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후속 조치 해양쓰레기 유입시 수거·처리계획·시행
시설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어항시설 순찰강화 및 공사장수방단 조직 현황파악 시공 중인 공사 현장 공정파악 및 현장대리인 비상 연락유지 공사장별 피해예방대책 강구 공사중인 현장 동원 가능 자원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공사·어항현장 피해 현황 파악·보고 항만·어항시설 피해현황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 조치 항만·어항시설 피해발생시 응급복구 대책 및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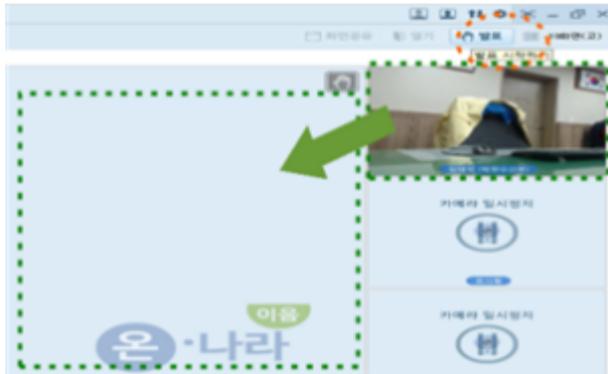
**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매뉴얼을 준용하여 임무·역할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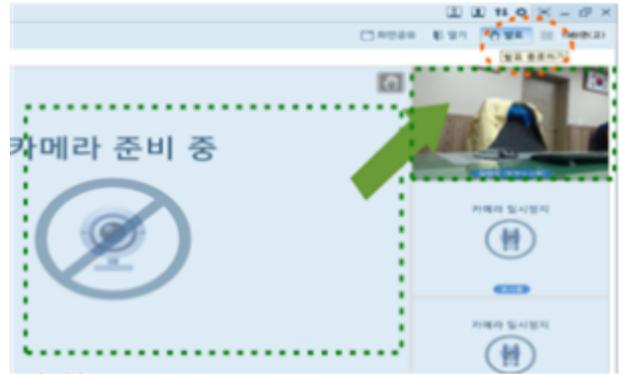
1. 영상회의 접속하시면 마이크 버튼을 클릭하여 끈 상태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자의 마이크는 끈 상태로 대기합니다.



2. 발표차례가 되면 버튼을 클릭하여 마이크를 활성화 해 주십시오.



3. 발표 시 창 우측상단의 '발표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내 화면이 발표자 위치로 옮겨집니다.



4. 발표 후에는 다시한번 '발표종료하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시 내 화면이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붙임 4

태풍 발생시 소속기관 비상반 편성표

< 00청/00단 >

태풍 담당부서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운영지원과	과장			

* 영상회의 담당자 및 위치 : 000 주무관(000-000-000) / 상황실 or 청장실 or 영상회의실

태풍 상황실 전화번호

실시반	연락처	
	상황실	비고
총괄반		상황실 별도 운영

태풍 비상근무자 명단(예시)

총괄반 (항만건설과)		행정반 (운영지원과)		선원해사안전반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반 (항만물류과)		시설반 (항로표지과)		해양환경반 (해양수산환경과)	
근무자	연락처	근무자	연락처	근무자	연락처	근무자	연락처	근무자	연락처	근무자	연락처

붙임 5

태풍 피해현황 보고(취합) 양식

총 피해현황

- 인명피해 : 00명
- 시설피해 : 00백만원('18.08.00. 10:00기준, 추정치)

시설별 피해현황

- 사유시설 : 00백만원

시설별	단위	피해내역		비고
		물량	피해액(백만원)	
계				
어선	척			수산반
어망어구	통			수산반
양식수산물(생물)	마리			수산반
양식시설	개소/			수산반

- 공공시설 : 00백만원

시설별	단위	피해내역		비고
		물량	피해액(백만원)	
계	개소	0	0	
어항시설	개소			수산반
수산시설	개소			수산반
어선(국가지방관리)	개소			수산반
청사시설	개소			수산반
등대시설	개소			복구지원반
항만시설	개소			복구지원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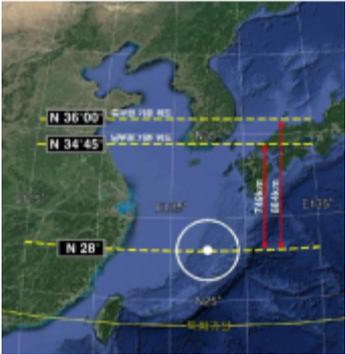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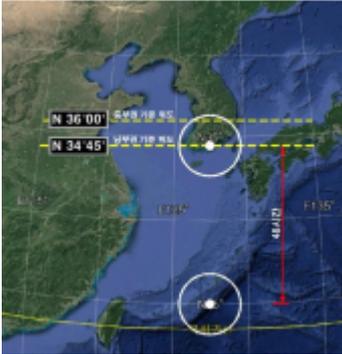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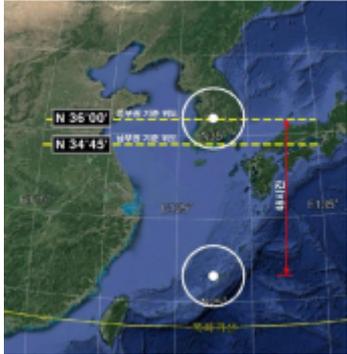
시·도별 피해현황

시도	시군구	피해액(백만원)			비고
		계	공공시설	사유시설	
계	0개	0	0	0	
부산					
제주					
마산					
목포					
여수					
울산					
00					어선

운영표준(안) 개요

구분	예방 단계	대비단계(1~3단계)				대응 단계	복구 단계
		1단계 (N22°, 대만 남단)	2단계 (N25°, 대만 북단)	3-1단계 (N28°, 오키나와 북단)	3-2단계 (N30°)	태풍 내습 시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재난발생 시 대처단계	
판단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 빈발시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태풍주의보 발효 ② 태풍중심 N25° 도달 시 (태풍 경계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태풍경보 발효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농후) ② 태풍중심 N28° 도달 시 (태풍 비상구역) ③ 태풍중심 기준위도 도달 48시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태풍경보 발효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② 태풍중심 N30° 도달 시 (태풍 비상구역) ③ 태풍중심 기준위도 도달 24시간 전 ④ 태풍강풍반경 가장 자리의 기준위도 도달 12시간 전 		
주요 입부	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박선박 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내 정박지 정박현황 점검 - 장기계류, 감수보존선박 계류현황 현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대피 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항 여부 결정 - 선박대피 완료시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대피 시행 선박대피 완료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사고 및 피해상황 파악, 피해복구 계획 수립·시행 	
주요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박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관련 기관과 비상연락망 유지 (지방청, 공사, 업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박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 비상근무조치 및 선내 순찰 강화(지방청, 공사, 업체, 선박직원) - 긴급상황 발생시 단계별로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대피능력 확인 (지방청,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박선박(선박대피협의회 개최, 항계내 재박선박 피항여부 결정: 지방청, 공사, 업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접안선박은 정박지로 이동하거나 항계 밖으로 대피 ② 항계내 정박된 선박은 선종 및 선박톤수별로 지정된 피항지로 대피 ③ 항계내 계류된 소형선박은 계류색 보장 등 결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박선박(정박선박 피항완료 점검: 지방청, 공사, 업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접안선박은 안전한 정박지로 이동 및 항계 밖으로 대피 후 피항완료 보고 ② 항계내 정박선박 피항지 대피 확인 ③ 항계내 계류된 소형선박은 계류색 결박 등 최종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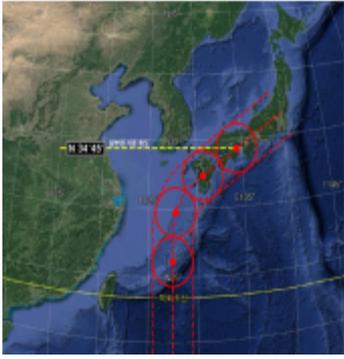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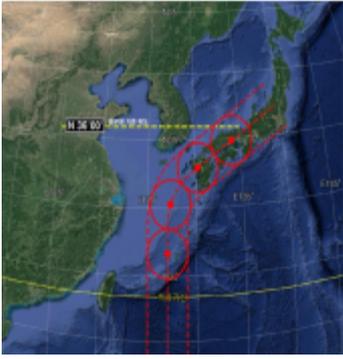
[1] 협의회 개최시기(남부권, 중부권)

구분	①태풍위치 (공간적 요소)	②태풍이동속도 (시간적 요소)	③태풍강도 (영향범위)	비고
표준안	태풍중심 북위 28° 도달	태풍중심 기준위도 도달 48시간 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② 중 태풍중심 위도가 낮은 경우를 적용 ■ 태풍중심이 E120°~135° 내 위치할 경우 개최 (실무매뉴얼: N30° & E132°-비상구역, N28° & E135°-경계구역) ※ 한국기상청 자료사용
개념도	 <p><북위 28° 기준></p>	 <p><태풍중심 상륙48시간전-남부권></p>	 <p><태풍중심 상륙48시간전-중부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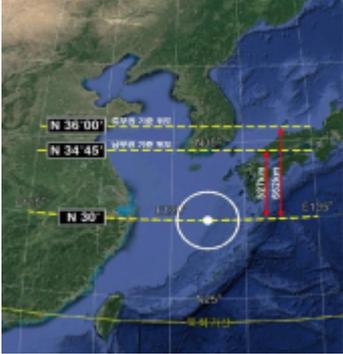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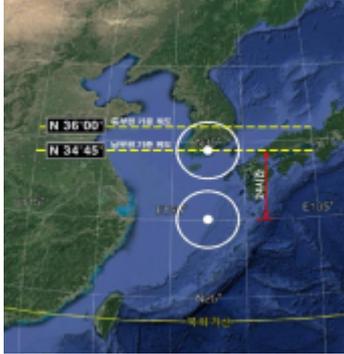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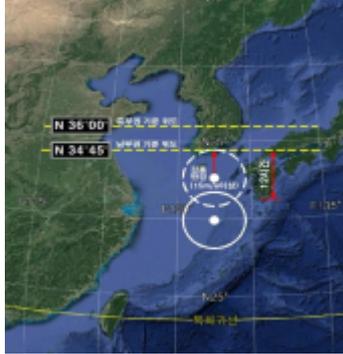
※ 권역별 기준위도 및 구분

권역별 기준위도	권역구분(남부권, 중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위도: 태풍중심 및 강풍반경 도달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판단기준 - 기준위도 적용: 선박대피협의회 개최, 선박대피 여부, 선박대피 완료시점 결정 ○ 남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위도: N34°45"(여수항 위도) - 적용대상: 포항청, 울산청, 부산청, 마산청, 여수청, 목포청, 군산청(7개 지방청) ○ 중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위도: N36°00"(군산항 위도) - 적용대상: 대산청, 평택청, 인천청, 동해청(4개 지방청) <p>※ 남부권과 중부권의 기준의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도달시간이 다르며, 실제 선박대피 시기가 중부가 남부보다 늦은 것을 고려 - 동일한 기준값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선박대피가 가능하도록 유도 <p>※ 제주도는 서귀포항 위도를 기준으로 사용함</p>

(2) 선박대피 여부(남부권, 중부권)

구분	태풍위치 및 강도 (공간적 요소 및 영향범위)	비고
표준안	태풍중심이 기준위도 도달 시 강풍반경(15m/s 이상) 영향범위를 벗어난 경우 선박대피 미시행	※ 한국기상청 자료사용
개념도	 <p style="text-align: center;"><남부권></p>	 <p style="text-align: center;"><중부권></p>

[3] 선박대피 완료시기(남부권, 중부권)

구분	선박대피 완료시기 결정			비고
	①태풍위치 (공간적 요소)	②태풍이동속도 (시간적 요소)	③태풍강도 (영향범위)	
표준안	태풍중심 북위 30° 도달	태풍중심 기준위도 도달 24시간 전	강풍반경(15m/s 이 상) 가장자리의 기준위도 도달 12시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②,③ 중 태풍중심 위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적용 ※ 한국기상청 자료사용
개념도	 <p><북위 30° 기준></p>	 <p><태풍중심 상륙24시간전-남부권></p>	 <p><강풍반경 영향권 12시간 전-남부권></p>	

[4] 협의회 주체, 개최방식 및 구성원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주체, 개최방식,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지방청 항만물류과 과장 - 간사: 지방청 항만물류과 담당계장 - 위원: 유관기관, 민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위원: 지방청, 항만공사, 기상청, 해경VTS 담당자 ▽ 민간기관 위원: 도선사회, 예선협회, 선주협회, 대리점협회, 민간업체 등 ■ 태풍정보에 대한 가변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회의 선택적으로 개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의사결정, 선박이동명령(지방청장) - 간사: 회의진행 - 기상청: 태풍예보설명(선택적 참여) - 해경VTS: 항계내·외 피항선박 모니터링 - 민간기관: 피항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항만공사: 피항 결정사항 민간기관 수행 여부 확인(선사, 운영사, 터미널 등) ■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위원: 당연직(직무) - 전문위원: 2년 ■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적정규모로 제한할 필요 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본회의</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추가회의(필요시)</td> </tr> </table>		본회의	추가회의(필요시)	
	본회의		추가회의(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방식(1시간 30분 내외) - 피항여부 판단 - 선종별 피항완료 시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방식(단체채팅방 등) - 피항여부 판단 조정 - 선종별 피항완료 시점 결정 조정 				

[5] 선박대피 조치사항 전달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Fax, 문자, 공문, 유선전화 ■ 추가사항: VHF(공용채널 일괄방송 및 필요 시 개별선박 호출), 단체채팅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채팅방: 태풍예보의 변화에 따른 실시간 정보교류로 활용

[6] 선박대피 대상 및 피항 우선순위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대피 대상은 항계내 재박선박(접안, 정박, 계류)이며 Port-MIS에서 확인 ■ 우선순위에 따른 선박대피 시기 차등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위험물 적재선(유조선, LNG 등), 관공선 등 - 2순위 : 여객선, 유람선, 소형화물선, 부선, 예선 등 - 3순위 :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화물선 등 ※ 장기체류선박(감수보존 등 장기계류) 파악 후 필요시 사전 안전조치 및 VTS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우선순위는 권고사항이며, 항만별 상황을 고려하여 세분화 또는 단순화하여 적용 가능함

[7] 피항지 수용선박 기준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내 및 항계의 피항지는 선종 및 톤수별로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내·외 정박지 투묘, 항계내 피항지 계류 및 접안 ※ 항만별 지정톤수 참고사항(현재 2019.0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별로 피항 여건이 상이하므로 표준(안)을 기본으로 상황에 맞도록 조정적용 ※ 피항이 어려운 시운전선의 경우는 관할 지방청 및 항만공사와 협의를 통해 항계내 접안 및 계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 유어선의 무역항 내 피항은 지자체(수협 포함)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된 피항지를 제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무역항의 원활한 운영 및 풍수해 대응을 위해 피항 불허가능(지자체 및 수협 담당자의 협의회 참석은 위원장 권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1천톤 이하 (4개소) ▽ 인천항: 7천톤 미만 (25개소) ▽ 여수항/광양항: 7천톤 이하(3개소) ▽ 울산항: 1천톤 미만 (1개소) ▽ 목포항: 1만톤 미만 (1개소) ▽ 군산항: 1만톤 미만 (접안 허용) </td>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 7천톤 이상 (3개소) ▽ 여수항/광양항: 7천톤 이상(1개소) ▽ 평택·당진항: 1만톤 미만(1개소)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1천톤 이하 (4개소) ▽ 인천항: 7천톤 미만 (25개소) ▽ 여수항/광양항: 7천톤 이하(3개소) ▽ 울산항: 1천톤 미만 (1개소) ▽ 목포항: 1만톤 미만 (1개소) ▽ 군산항: 1만톤 미만 (접안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 7천톤 이상 (3개소) ▽ 여수항/광양항: 7천톤 이상(1개소) ▽ 평택·당진항: 1만톤 미만(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1천톤 이하 (4개소) ▽ 인천항: 7천톤 미만 (25개소) ▽ 여수항/광양항: 7천톤 이하(3개소) ▽ 울산항: 1천톤 미만 (1개소) ▽ 목포항: 1만톤 미만 (1개소) ▽ 군산항: 1만톤 미만 (접안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 7천톤 이상 (3개소) ▽ 여수항/광양항: 7천톤 이상(1개소) ▽ 평택·당진항: 1만톤 미만(1개소) 		

[8] 선박대피 완료시점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대피 완료시점은 대피행위가 종결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내: 피항 정박지 투묘완료, 피항항만 계류 및 접안완료 - 항계외: 피항 정박지 투묘완료 및 항계 통과시점(재입항선박) 	※ 대피행위 종결에 근거하여 항만별 이안시점과 항계통과시점을 정할 수 있음

[9] 선박대피 완료보고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대피선박 현황과약 후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 현황과약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VTS(해상교통관제센터): 대피선박 현황과약 협조(무역항 수상구역 등 정박지 선박 현황과약) - 항만공사: 대피선박 현황과약 협조(재박선박 현황과약) 	※ Port-MIS 정보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有: 관제실 파견된 항만공사 직원입력 - PA無: 관제사 직접입력

[10] 항만운영재개(Port - open)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 태풍특보(주의보, 경보) 해제시 (예시, 태풍특보 -> 풍랑특보, 평시 항만운영 기준 풍속 고려) 	※ 기상청에서 태풍특보 발령시 변경예보가 함께 공시되므로 사전에 부두운영 준비 가능

[11] 부산청 항계내 피항지

명칭	수용 규모	비고
봉래동물양장	1천톤 이하 부선, 급유선 200여척	
45물양장	1천톤 이하 급유선, 관공선 300여척	
동천하구	500톤 이하 항내운항선 10여척	
감만시민부두	1천톤 이하 급수선, 예선, 관공선 50여척	

7

항만 및 어항시설 현황

가. 종별 현황

시설물별		계	1종	2종	기타	비고
항만시설	임항교통시설	4	3	1	0	
	외곽시설	30	1	9	20	
어항시설	계류시설	10	0	0	10	
	외곽시설	10	0	0	10	
합계		54	4	10	40	

나. 종류별 현황

합계	방파제	파제제	호안	도류제	돌제	임항교통시설	소형선부두	선양장
54	14	2	21	1	2	4	8	2

다. 상태등급 및 종별 현황

합계				A급				B급				보통시설(C급)				취약시설(D,E급)			
계	1종	2종	기타	계	1종	2종	기타	계	1종	2종	기타	계	1종	2종	기타	계	1종	2종	기타
54	4	10	40	28	0	1	27	19	4	6	9	6	0	3	3	1	0	0	1

라. 항만시설물

구 분		시 설 명		현재등 급	구조형식	준공년도
외곽시설	2종	송도 준설토 투기장 외곽호안		B	케이슨제	2015
	기타	송도 준설토 투기장	분리호안	A	사석경사제	2015
			내부가호안	A	혼성제	2015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외곽호안		A	사석경사제	2020
임항교통시설	1종	양산ICD인입철도		B	일반철도	2005
외곽시설	1종	오륙도 방파제		B	케이슨혼성제	1991
	2종	조도 방파제		B	케이슨혼성제	1989
		신선대 준설토 투기장 호안		A	사석제	2008
		감천항 동방파제		C	케이슨혼성제	1986
		감천항 서방파제		B	케이슨혼성제	1990
		다대포항 서방파제		B	사석식경사제	2015
	기타	해경부두 파제제		A	블록식	2013
		감천항 남방파제		B	케이슨혼성제	2013
		감천항 도류제		C	케이슨혼성제	2013
		다대포항 동방파제		B	사석식경사제	2015
		다대포항 낮개방파제		B	사석식경사제	1990
		감천항 돌제(1)		A	중력식	2016
		감천항 돌제(2)		A	중력식	2016
	용호부두 방파제		A	중력식	2016	
임항교통시설	1종	웅천대교(도로교)		B	스틸박스	2004
		안골대교		B	아치교	2014
	2종	눌차교		B	강합성콘크리트	2009
외곽시설	2종	웅동 준설토 투기장(1공구) 외곽호안		B	사석경사제	2004
	2종	신항 동방파제		C	사석경사제	2002
	2종	신항 서방파제		C	사석경사제	2002
외곽시설	기타	남권준설토 투기장(1공구)	외곽호안	A	혼성제	2009
		남권준설토 투기장(2공구)	외곽호안	A	사석경사제	2011
			배수호안	A	사석경사제	2011
		서권 준설토 투기장	내부가호안	A	사석경사제	2012
			남측외곽호안	A	혼성제	2012
			연도제방	A	사석경사제	2012
			서측외곽호안	A	사석경사제	2012
		남권 임항도로	외곽호안	A	사석경사제	2009
웅동 준설토 투기장(2공구)	외곽호안	A	경사제	2004		

마. 어항시설물

구 분		시 설 명	현재등급	구조형식	준공년도		
기 타	다대포항	계류시설	소형선부두 A	C	널말뚝식, 중력식	1995	
			소형선부두 B	C	널말뚝식, 중력식	1995	
	대변항	외곽시설	동방과제	B	사석식경사제	2002	
			남방과제	B	사석식경사제	2006	
			호안 A	A	혼성제	1996	
			호안 C	B	사석식경사제	2001	
			호안 D	B	중력식	2011	
		계류시설	소형선부두 A(내항)	B	중력식	2011	
			소형선부두 B(내항)	B	널말뚝식, 중력식	1998	
			소형선부두 E	A	중력식, 사석식	2011	
			소형선부두 F	D	중력식	2011	
			소형선부두 G	A	중력식	2011	
			선양장	A	중력식	2011	
		천성항	외곽시설	방과제	A	블록식혼성제	2020
				잠제(과제제)	A	사석식경사제	2020
	친수호안			A	사석식	2020	
	호안 A			A	사석식	2020	
	호안 B			A	사석식	2020	
	계류시설		소형선부두	A	중력식	2020	
			선양장	A	중력식	2020	

8

항만 및 어항공사현장 현황

현상명	감리				시공사				비고
	용역사	단장/담당자	전화	휴대폰	시공사	소장/담당자	전화	휴대폰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주)수성엔지니어링	홍석권 단장	051-469-8693	010-6749-7319	(주)쌍용건설	안재희 소장	051-467-2566	010-7404-6110	
		김태욱 상무	051-469-8693	010-4570-3162		조성배 차장	051-467-2596	010-2514-1251	
	(주)세일종합기술공사	김진수 이사	051-469-8693	010-5209-7634		김훈기 차장	051-467-2596	010-9533-4887	
조도 및 오륙도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	(주)아라기술	유봉식 단장	051-583-7474	010-3871-1887	(주)남광토건	김병곤 소장	052-230-8191	010-9683-9658	
		박상귀 전무	051-583-7475	010-7345-2568		김병욱 차장	051-404-0772	010-3163-9470	
대변항 태풍피해복구 및 내진보강공사	(주)건일	우형구 단장	051-723-4531	010-3092-9874	(주)K&I건설	김동균 소장	051-723-4896	010-8413-7876	
		고성록 이사	051-723-4531	010-7594-4310		한성호 차장	051-723-4887	010-9324-2107	
	(주)한국항만기술단	조영현 상무	051-723-4534	010-3721-4419		-	-	-	
대변항 정비사업	(주)아라기술	김법설 단장	051-724-7518	010-4203-5673	(주)두산에너지관리	박희대 소장	051-724-4149	010-5395-6998	
	(주)세일종합기술단	김병리 이사	051-724-7518	010-5267-2926		이연재 부장	-	010-2586-6613	
다대포 연안경비(2단계)	(주)아라기술	이문서 단장	051-292-3145	010-3591-2979	(주)한양	김지상 소장	051-911-0400	010-2651-1695	
		한정호 이사	051-292-3145	010-3881-3831		오동훈 차장	051-911-0401	010-2640-0216	
영도 감지2지구 연안경비	(주)에이엔씨	박대일 단장	051-711-0985	010-3423-1118	(주)동양건설사업	차종환 소장	051-710-7848	010-2936-0451	
		주철호 상무	051-711-0985	010-2083-3348		이신호 차장	051-710-7848	010-4613-2710	
부산항 신항 남컨터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	(주)세일종합기술단	한태영 단장	051-831-7508	010-6085-8345	현대엔지니어링(주)	이성돈 소장	070-8280-2462	010-8243-7016	
		정원규 상무	051-831-7508	010-4264-4285		-	-	-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주)건일	한철 단장	031-738-6330	010-2442-2456	가산토건(주)	정순갑 소장	061-244-1226	010-3643-3210	
		김우곤 이사	031-738-6330	010-6585-7287		오상덕 팀장	061-244-1226	010-9141-0031	
부산항 신항 제덕 외 3개 물양장 정비공사	(주)한국항만기술단	정인호 단장	055-552-7572	010-2662-7571	(주)동양건설산업	권혁상 소장	055-545-8068	010-3318-8049	
		서병철 이사	055-552-7572	010-2029-5929		남원석 팀장	055-545-8068	010-9235-1792	
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주)건일	전영준 단장	070-4229-2771	010-4819-8247	현대엔지니어링(주)	이동경 소장	070-7575-0755	0110-3988-9871	
		강문철 이사	070-4229-2771	010-4540-7845		-	-	-	

소관 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연락처

전화) 051)609-6784

팩스) 051)609-6779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